

제2회 인권교육 정책 토론회

“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교육 ”

- 시간 : 2011년 6월 23일(목) 오후 1시30분~6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 홀 (서울 동교동)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오늘날의 인권 담론이 문화와 생활의 모든 영역 걸쳐 시민의 인간다운 삶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인권도시의 중요성과 의의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5.18기념재단이 주최하고 인권재단이 공동주관하여 5월 16일-17일 광주에서 열린 2011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WHRCF)는 모든 주민들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인권도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차원의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법제화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Human Rights)을 통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또한 제도와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환으로 유엔은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의 후속 조치로, 2005년부터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2005-2014)'을 채택한 바 있고 2010년부터 대학,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춘 '유엔(UN)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2단계'(2010-2014)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재단에서는 2011년 3월 31일 발의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은재 의원 외 15명)과 1차 NAP (2007년-2011년)의 인권교육정책에 관한 평가 및 향후 모색과 아울러 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인권교육 유엔인권교육프로그램의 국내이행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결과는 인권도시운동을 통해 공무원의 인권교육활성화와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반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세부내용]

시 간	세 부 내 용
1:30 - 1:35	인사 및 토론회 개최 취지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1 부 -	
1:35 - 3:30	인권교육 법제 및 정책 현황과 과제 - NAP와 인권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1:35 - 1:40	1부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부 사회)
1:40 - 2:10	발표 나영희 (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전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10 - 2:50	1부 토론 우무정 (국회사무처, 이은재 의원 정책보좌관)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정영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변호사)
2:50 - 3:30	1부 전체 토론
3:30 - 4:00	휴 식
- 2 부 -	
4:00 - 5:45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4:00 - 4:05	2부 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2부 사회)
4:05 - 4:35	발표 나달숙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4:35 - 5:15	2부 토론 권혁장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 양효정 (순천시 자치행정과) 이시현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5:15 - 5:45	2부 전체토론
5:45 - 6:00	마무리

- 제목 차례 -

□ 제 1 부	5
발표문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 NAP와 인권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나영희)	
7	
토론문	
1. 인권교육지원법, 인권교육 강화의 초석이 되기를 (우무정).....	
21	
2.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토론문 (이발래).....	
23	
3. NAP와 인권교육 법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정영선).....	
27	
4.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토론문 (홍관표).....	
33	
□ 제 2 부	41
발표문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나달숙)	
43	
토론문	
1. 공무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권혁장).....	
57	
2.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현실과 공무원 인권교육 적용 방안	
(양효정).....	
59	
3. 광주광역시 인권교육 기본계획(안) (이시현).....	
61	
4.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임재홍).....	
73	
□ 별첨	77
1.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문	
79	
2.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문	
83	
3. 인권교육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안.....	
99	
4. 인권교육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2009).....	
127	

□ 1부

- 발표 : 나영희 (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전남발전연구소 초빙연구위원)

- 토론

토론 1 : 우무정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토론 2 :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토론 3 :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4 :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변호사)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NAP와 인권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나영희 (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전남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I. 서론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인권교육이 장기적으로 인권침해예방은 물론 인권의 실현과 그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공감하여 왔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감은 구체적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제26조),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제7조), 사회권규약(13조), 고문방지협약(10조), 여성차별철폐협약(10조), 아동권리협약(29조), 이주노동자권리보호조약(33조), 장애인권리조약(4항, 8항)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제1부 33-34항, 제2부 78-82항), 2005년 세계정상회담 성과보고서(131항)에서 표출되어왔다. 그러한 국제 사회의 공감은 유엔 회원국이 비준한 각종 규약의 이행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의 인권교육의 지속적 강조로 이어졌고, 한편 회원국의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종합적인 참여와 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이어졌다. 유엔 인권교육10년(1995-2004)과 NAP 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노력, 제 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유엔 회원국은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의 실행에 동참하여왔다.

한국에서도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국제인권규약 조약감시위원회에서의 한국정부에 인권교육의 권고를 근간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인권교육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인권교육의 원칙과 대상별 프로그램을 담은 교재의 발간 등에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국내적으로는 제 1차 국가인권행동계획의 인권교육 분야의 범주로 보다 제도화된 기반을 갖게 된 것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러한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공권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통한 공권력의 인권침해예방노력이 중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글은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인식되고,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제정되고, 이어 제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적으로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과제를 주로 다루고자 한다.

II. 국내 인권교육의 현황-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1. NAP에서의 인권교육,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전반적 개괄

1). NAP에서의 인권교육 5개년계획의 내용

가. 인권일반

-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수립
- 인권교육법제정
- 인권교육프로그램과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
- 인권교육평가지표 개발
-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주제별, 분야별 강사 풀 구축, 인권교육가 연수과정 개설

나. 학교인권교육

-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 교과부, 인권위, 교육청 참여
-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 교원인권교육
- 인권교육연구학교 및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 및 운영

다.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 일반 공무원 대상- 매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반영
- 법무, 검찰공무원 인권교육- 법무, 검찰 공무원, 교정공무원, 출입국 관리 공무원, 경찰, 군대, 새터민 관련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 대상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청소년, 시설생활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마. 기업 및 언론인, 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등

2) 1차 NAP 4년의 성과와 평가

가. 1차 NAP 4년의 성과

1차 NAP기간 중 지난 4년의 성과는 무엇보다 인권교육의 제도화의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도화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일회성이 아닌 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의 법률, 규칙 등에 인권교육의 의무적 이행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의 개념에 의거하여 볼 때, 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국가인권위), 반 인권적 교과서 내용의 수정과 2007년, 2009년 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교육과정의 반영,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교의 장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는 조항 반영 (교과부), 정신보건법 개정과 노숙자복지법제정에서의 관련 공무원과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조항의 반영(복지부), 군대내 인권교육규칙제정으로 군대인권교육의 방향과 원칙과 일정 인권강좌 시수 반영(국방부), 공무원훈련과정의 인권교육권고 지침으로 일정 공무원 훈련기관에서의 인권교육 강좌 반영(행자부), 법무·검찰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훈련과정에 일정 시간 인권교육 강의 시수의 반영과 자체 내 인권강사의 육성과 훈련 (법무부, 경찰청) 등은 주요한 성과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주요한 동력의 역할이 매우 활발하였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러한 동력으로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교육의 방향과 원칙, 올바른 인권교육시행의 방식에 대한 사회 내 담론의 전개에 인권단체의 활동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인권단체 활동이 인권교육의 인식과 확산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한 초석과 원칙 하에서 인권교육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각 부문내의 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이행의 전제인 제도화를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담부서는 관련 부처나 기관내의 인권 전담(혹은 관련)부서간의 지속적 협의와 공동사업의 운영을 통해 관련 부처 내에서 인권교육이 제도화의 방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매우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전담부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권교육교재의 발간과 보급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제도화를 내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권교육협의회와 인권연구학교의 운영,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의 운영, 인권강사의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물론 그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노력의 경주에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NAP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인권의 보호와 실현, 그 증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분야(공공부문, 학교, 기업, 언론인, 일반성인 대상의 평생교육부문)를 선정하고 이들 부문에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형성하였다.

그러한 NAP의 전체적 구도 하에서 실제로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인권교육이 시행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이러한 제도적 틀이 지역 내에서 인권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 전초지 내지 전략적 벨트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거점대학, 거점 초중등학교들을 인권연구학교 내지 인권연구중심대학 등으로 지정하여 이들 삼자가 지역 내의 인권문화 형성과 확산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와 지원을 하여왔다.

그러한 가운데, 인권교육이 실제로 인권문화의 형성과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여 왔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용역으로 인권교육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나. 1차 NAP의 평가

앞서서 언급하였듯이, 2007년 NAP 수립이후 지난 4년간 실제로 이루어진 인권교육은 제도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양적인 면에서 인권교육의 엄청난 확산은 물론 이러한 양적인 확산이 제도화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질적인 면에서의 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하는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인권교육의 성과는 세계적인 모델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성과가 실제로 인권문화의 형성과 증진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해왔는가, 혹은 제도화라는 외양은 갖추었지만 실제로 그 제도화가 여전히 취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인권교육의 사각지대는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한 성찰이 바로 2차 NAP 수립의 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1차 NAP 수립이후 이루어진 인권교육을 다음의 지점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첫째, 여전히 인권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해야 할 주요한 부문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다. 인권교육에 관한 유엔의 권고에서도 사법부와 입법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와 사법부 대상의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인권교육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에서의 인권교육의 접근이 여전히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주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주 대상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전경련과의 공동주최를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기업 내에 전파해보려고 하였으나, 그 성과는 괄목할 만하지 않다. 특히 기업의 문화를 선도하는 대기업의 접근은 여전히 난공불락이다.

인권위에서는 물론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권경영 논리의 개발,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와의 공동협의, 기업의 인권가이드라인 연구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과 인권과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권의 용어 그 자체와 인권위에 대한 기업의 민감한 반응등으로 인해 기업 내에서 인권(혹은 차별문제)교육의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울러 일반 성인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강좌에서의 인권교육이나, 평생 교육사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시행되었지만, 향후의 시행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둘째, 공공부문에서의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여전히 권고 중심이다.

이 부문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평가는 후술한 부문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만 여기서 평가해야 할 항목은 법률이나 교과과정을 통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인권교육의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양적인 확산 그 자체도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이고, 아울러 양적인 확산이 제도화로 이어지면서 인권교육의 질적인 도약을 담보해 내도록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이다. 법무부나,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또한 인권교육 강사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화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강한 권력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시행의 내용과 그 수위, 그리고 자체 내 강사의 자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질적 내용의 담보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부터 제기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NAP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법무부가 인권국을 신설한 후 인권교육을 포함한 인권정책의 주무 부처로 고집하는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물론 법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설령 이후 2차NAP 수립에서 인권교육 모니터링 시스템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모니터링의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권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은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질적 담보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넷째, 인권교육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가의 평가지표가 부재하다.

인권교육만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인권의 문화의 조성에는 인권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인권문화의 조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그런 맥락에서 인권위원회가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인권감수성 평가지표를 공식화하기에는 일정한 시간의 소요와 더불어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질적 담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이 평가지표의 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의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문화는 존재의 의식을 지배한다. 한번 정착된 문화는 정권의 부침에서도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인권교육이 인권문화 조성의 기반이 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바로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권교육 제도화의 방식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의 새로운 창설에서부터, 인권도시의 조성 등 매우 다양하기에, 이러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주체들 간의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경찰청, 교과부 등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의 제도화의 성과와 현황

제1차 NAP의 인권교육의 성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성과이다. 이점에서 소위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의 제도화의 현황과 성과 또는 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성과는 NAP와 관련법이나 내부 규칙 등에서 인권교육시행이 의무화되거나 권고됨으로써, 인권교육이 많이 활성화되었다.

2009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이하 ‘이행상황’)에 따르면, 법무부의 경우 상하반기, 신입검사 역할극 훈련,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 관리 분야의 인권감수성 훈련과 방문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이 시행되었고, 또한 자체 내 인권교육의 강사양성 심화과정도 시행하였다. 아울러 인권교육 교재로 ‘검찰과 인권’, ‘교정과 인권’, 출입국 관리 분야 인권실무교재와 수용자를 위한 인권가이드 북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경찰청의 경우, 전체 경찰관 대상 연간 10시간 이상 인권교육이수와 각급 경찰훈

련기관은 물론 경찰서와 광역수사대 등에서 인권강좌를 개설하고, 경찰교육원을 중심으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마도 양적으로 본다면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이 인권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경찰분야이다.

군대의 경우, 인권교관, 군 의료종사자, 수사종사자, 군 법무관 등 인권업무 종사자의 인권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한 인권교육연수과정을 2009년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지휘관 및 부대관리 실무자 인권교육과 더불어 국방부와 각 군 공동주관으로 성구매자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군대의 경우,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국방부 인권담당과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 협의 하에 국방부 내 ‘군대인권교육 규칙’(이하 ‘규칙’)을 제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 이미 사문화되었는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가장 접근이 어려웠던 군대분야에서 적어도 내부적으로 ‘인권교육 규칙’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접근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교과부의 경우, 공공분야에서 제도화의 성과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긴 하지만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의 시행은 제도화에 비해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우선 그 현황을 보면 ‘2007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포함하여 도덕과, 사회과, 등의 관련 교과 및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도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교육을 그대로 계승하여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의 학습교과에 인권교육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2007년도에 ‘초중등교육법’개정이 이루어져,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2011년도 3월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학칙 제정이나 개정 시의 요건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개정과 각종 교원직무연수에 ‘인권 및 감수성 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권장을 고시하기도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다른 공공분야보다 많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교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과정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정은 제시되었지만, 교사와 학생간의 특별한 권력관계가 존재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깊은 거부감과 더불어 실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강력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의 미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복지부의 경우, 2008년도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시설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고 노숙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담당 공무원과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는 조항이 신

설립에 따라 인권교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도 현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관련 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이 시행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면서 담당 공무원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많이 운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교육이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에 실제로 기여하였느냐,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그나마 외부 강사의 접근이 가능한 교과부, 복지부, 경찰청 등은 인권교육의 기여정도 내지 그동안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내용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법무부의 경우 외부 강사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인권교육의 내실화 여부를 알 수 있지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양적인 인권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그 인권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를 강력히 제기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의 내용에는 인권강좌의 강사가 누구인지, 교재의 내용이 실제로 인권의 원칙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전히 현장에서 감지되는 인권교육에 대한 거부감 등을 외부 강사가 잘 컨트롤하는 지 등 다양한 접근의 모니터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인권교육의 운영의 방향이 제시되고 반영되는 인권교육 환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부문의 인권교육의 질적 고양을 위한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기된다 할 것이다.

3. 민선 교육감시대와 학생인권조례, 광주의 인권도시 표방에서의 인권교육의 역할

2010년도 민선 교육감시대가 열리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학생인권 보장 등에 대한 조항이 실제로 ‘초중등교육법’개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이루어졌지만, 학생인권에 대한 교원의 거부감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물론이거니와,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학교의 제재, 아울러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정치적 의견의 표시나 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 경기, 전북 등의 민선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왔다. 그런데 왜 조례제정인가?

인권이 실제로 보장받고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강자의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실제 법률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앞서 언급한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있으며, 나아가 교원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교원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의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게 된다. 결국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움직임은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의 제도화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교육의 제도화는 사실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반구축의 중요한 요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한 부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광주가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현 광주시장의 인권도시 표방을 계기로 광주는 물론 인권운동진영에서 인권도시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광주의 인권도시 표방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그러한 표방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광주시청 내에 인권담당관 부서를 신설하였고,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인권지표 개발, 광주 인권실태조사 실시, 광주의 인권정책 수립, 인권도시와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공무원이나 시설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의무화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도시라는 공간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광주가 인권도시의 표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실체에는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필수 요건으로 전제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권도시는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기여하고 인권 문화를 형성하는 또 다른 방식의 제도화인 셈이다.

4. 인권교육의 법제화 추진의 배경과 현재의 인권교육지원법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법률제정을 위한 노력에 들어간 시기는 2006년도이다. 사실, 인권교육의 법제화의 필요성은 바로 인권교육의 제도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1차 NAP 등에서의 과제로 제시된 내용들을 구조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권교육의 법제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법률적 권리로 창설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 등이 명시화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법률안’(이하 ‘인권교육지원법률안’)의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인권교육지원법률안’의 핵심적 조항으로는 법의 목적(안 제1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 5조), 그리고 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안 제 7조), 인권교육의 평가 등(안 제 13조), 그리고 인권교육센터(안 제 11조) 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권교육에 관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고, 그것은 특히 공권력의 행사 내지 입법의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인식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의 정착과 확산에도 실질적 진전이 있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때마침 유엔에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채택되고, 제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번 법률안의 통과 여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금번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관계자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무부가 대승적 관점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III. 유엔인권교육훈련 선언과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던지는 과제

유엔이사회에서 2011년 3월에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채택되었고, 아울러 제 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도 유엔이사회 결의에 의해 2010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새로이 시행되게 되었다.

우선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은 무엇보다 인권교육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새로이 회원국에게 각인시킨 것이다. 이 훈련선언에서 주목을 끄는 내용은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권리(제1조), 국가 및 관련 정부부처의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더불어 인권교육훈련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입법적, 행정적 수단 및 정책 등의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노력(제 7조 1항과 3항), 국가인권기구에게 인권교육 훈련증진의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부여(제 9조), 정부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군대내의 간부는 물론 교사, 국가나 지자체의 위탁사업에 종사하는 민간부문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제7조4항),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과정의 통합(제 8조) 등이 있다. 이러한 훈련선언의 내용은 바로 인권교육 법제화에서 담을 원칙과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한편 제 2차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은 그 이행기간이 2010년에서 2014년에 이르는 5년 기간이다. 이와 더불어 부제에서 나타나듯이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 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보다는 특히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와 교사를 집

중적인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중 인권교육의 정책과 제도화로 연결되기 위한 추진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세션에서 인권교육훈련 정책과 기타 관련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권교육훈련이 해당 기관의 관련 정책이나 규칙 등에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다(2.(a) 인권훈련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 4.3). 이와 더불어 2세션의 (d)에서는 '인권훈련 제도화에 관한 사항'에서 '공무원, 법 집행관, 군인 등의 인권교육훈련에 대한 의무가 일회성 훈련으로 변형되지 말고 국가훈련체제로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d)(i))는 것과, '대학, 정부기관,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전문가를 배치한다'((d)(iii)), '각 국가체계에 맞춘 제도화된 인권교육에 관한 평가와 영향 평가 메카니즘을 구축할 것'((d)(vi))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제 4단계: 평가 세션의 2. 조정 및 협조사항과 관련하여, '정부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국가이행전략의 세부 계획 수립 및 조정, 이행, 모니터링을 담당할 관련 국가기관(focal point)을 지정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인권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인권교육정책이 관련 정책이나 제도, 법에 반영되도록 하며, 나아가 인권교육 훈련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인권교육의 국가이행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조정, 이행, 모니터링, 평가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그러한 메카니즘의 focal point로서 국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핵심적 내용들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교육의 법제화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되는 데,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지원법률안'에서 이러한 점들이 다 들어있는지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인권교육의 법제화 등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과제

국내에서 인권교육의 법제화 등 제도화의 필요성에 주목한 기관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인권교육의 일회성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민이 바로 제도화의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인권교육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그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인권교육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바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물론 그 당시 인권교육의 제도화 내지 법제화 등을 둘러싸고 인권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 인권교육의 법제화 방식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우세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그러한 시각의 이면에는 아직 인권교육의 원칙이나 방향이 널리 확산되거나 공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변질된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은 무엇보다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향, 인권교육의 의미,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부문의 책무, 인권교육의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의 구축을 명확히 법률적으로 입법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의 ‘유엔의 인권교육10년(1995-2004)과 ‘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의 이행 기간을 거치면서 그간의 성과와 평가를 기반으로, 유엔에서 비로소 인권교육의 제도화 방식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 바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과 ‘제 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엔 회원국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훈련프로그램’이 종결되는 시점인 2015년에 인권이사회에 그 이행 결과와 더불어 최종 평가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인 2008년도에 한국정부가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여만 하는 이유와 더불어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 공약의 하나가 바로 인권교육이었다.

이제 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책무의 하나가 바로 인권교육의 제도화이다.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들어가야 할 핵심적 내용이 유엔에서 제시한 바대로 포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부의 주요한 책무인 것이다. 그러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지원법률안’의 통과여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냐 일 것이다. 이 지점이 무엇보다 법무부의 대승적 관점이 필요한 지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권교육의 제도화 방식이 인권교육의 법제화와 더불어 매우 다양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광주의 인권도시 표방도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이 기실 인권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이들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기적 상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각 회원국에게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론화하는 현 시점과 현재 1차 NAP 수립의 이행의 마지막년도인 2011년에 ‘인권교육지원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현 시점은 바로 인권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진 이들의 관심과 역량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인권교육전문가 초청 간담회 자료집, 2011
- 국가인권위원회, 주요기업의 인권정책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2008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2011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09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2010
- 대한민국 정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07
- 대한민국 정부, UPR 국가보고서, 2008
- 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1

인권교육지원법, 인권교육 강화의 초석이 되기를

우무정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최근 인권문제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
 - 그동안 학술적·이론적인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해 왔지만, 최근에는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인권보호 확대 및 증진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한 특징적 추세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발맞추어 유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에 따라 과거에 비해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유관부처별로 인권교육의 실적이 축적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유관부처의 실무담당자, 그리고 인권단체 등의 주역과 같은 노력이 있었음
 - 하지만,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였다는 것은 인권교육 제도화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 내지 한계로 작용하였음
 - 즉 인권교육 관련 부처, 기관,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미비해 인권교육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노정되었으며, 특히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논리적 토대를 확보하기 어려웠음

- 「인권교육 지원법」은 늦게나마 인권교육의 체계를 견고히 하고, 유관부처 및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의 인권교육의 성과나 의의(意義)가 퇴색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욱 더 그 성과를 빛나게 할 것임

- 인권교육에 관한 제반 활동이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될 것이므로 발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존재하는 인권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임
 - 공공부문의 인권교육 제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 문화의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또한 그동안은 인권교육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에는 인권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도 인권교육시스템의 영역에 포함시켜 인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인권교육 지원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인권교육 실시의 책무를 지닌 일부 부처의 이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 각 부처별로 인권교육의 세부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거시적·장기적 비전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 유관부처 및 기관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인권교육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
- 오늘 토론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은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인권교육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일 것
- 당장 27일(월)에 동 법안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NAP와 인권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1. 발제문에 대하여

- 1기 NAP에서 인권교육의 제도화의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제도화를 법제도 마련이라고 한다면 아직 진행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부처나 기관내의 인권 전담(혹은 관련)부서간의 지속적 협의와 공동사업의 운영, 그리고 인권NAP를 통하여 인권교육이 제도화의 방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매우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
- 1기 NAP의 평가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사각지대로 입법부와 사법부, 기업에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부재, 인권교육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가의 평가지표가 부재,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의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공감대가 부족”에 대하여 동의
-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경찰청, 교과부 등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의 제도화의 성과와 현황에서 “양적인 인권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그 인권교육의 질적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하고 그러한 기반으로 인권교육의 운영의 방향이 제시되고 반영되는 인권교육 환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생각
- 민선 교육감시대와 학생인권조례, 광주의 인권도시 표방에서의 인권교육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
- 유엔인권교육훈련 선언과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인권교육 법제화에서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
-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법제화 등 인권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과제는?

2. 인권NAP 성과와 평가

가. 인권교육 관련 인권NAP 권고에 대한 불수용

-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및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 기업대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히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램 추진

나. 제1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제1기 인권NAP에 대한 평가는 계획평가, 실행평가, 환경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음.
- 계획평가 : 권고안수용여부, 목표의 정당성, 정책수단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권위 권고안이 적절성 여부
- 실행평가 : 인권개선의 구체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환경평가 : 1기 수립시 대내외 환경이 현재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평가하여 2기 권고안 마련의 배경을 검토

다. 권고안 마련

- 1기 NAP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2기 NAP 권고안을 마련

3. 법률안에 대하여

가. 법률의 필요성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고 성별, 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
- 인권교육은 인권선진화의 필수적 요소로서, 국가의 품격향상과 선진화를 추구하는 인권교육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국제사회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인권(교육)에 있어서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임.

나. 법률소관 부처

-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서 “인권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 및 전문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참여해야 하고, 특히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대중의 의식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권문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반대하는 노력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 “법률 소관부처와 관련하여, 실제 검찰고문 등의 행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한 법무부가 맡아서는 안 된다”(장신중).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시행령)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계획 수립, 교육 실시·지원, 교육 평가 및 이의 환류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계획이행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라.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

- 발제문의 Ⅲ장 내용

마. 사적영역에 대한 인권교육

- 법률안예의 인권교육의 대상을 주로 공공기관의 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사적영역(사설기관 및 사기업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
- ISO(국제표준화기구)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조직은 권리 보유자들과 권리 보유자들에게 영향을 줄 잠재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인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강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발전법」 제19조에 따라 정부(지식경제부장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시행

4. 마무리

가. 인권의 체화

나. 홍보(광고) 포함

NAP와 인권교육 법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정 영 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제1차 인권 NAP 수립의 국제적 배경

- 국제사회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인권 NAP (National Action Plan) 작성은 국가인권기구의 탄생 및 역할 정립과 맞물리며 진행되어 왔다. 2차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공론화되기 시작한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세는, 1976년 양대 국제인권규약,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991년 파리회의에서 결의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은 이후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준거틀이 되었다. 또한 1968년 테헤란 회의에 이어 25년 만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 인권대회(1993년 6월)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78개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세계 각국이 인권NAP를 수립할 것을 엄숙하게 권고하였다.
- 이는 각 국에서 시도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인권 NAP 수립 작업이 각 국의 국내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태동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원을 가지며 국제사회 연계망 및 국제법의 발전과 함께 성숙되어 온 논의의 결실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5월 한국정부에 대해 인권NAP 수립 진행 상황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 제1차 인권 NAP 수립의 국내적 노력

-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002년부터 인권NAP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온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와 맺은 약속을 이행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측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각 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이 절실한 국내적 요구의 발로였다. 물론 비엔나 선언 및 유엔의 권고가 인권 NAP 권고안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권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 전반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권 종합정책 수립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 인권위 내에 인권 NAP 관련 관심이 자리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2년 4월경으로

위원회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이다. 이미 호주를 필두로 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인권 NAP 수립 바람은 인권 관련 국제교류가 잦은 준국제기구인 인권위에 손쉽게 상륙하였다. 2002년 8월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작성된 인권NAP안내서(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는 곧바로 위원회에 소개되었고 이듬해 번역과정을 거쳐 국내에 출간됨으로써 인권NAP 작성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되었다.

- 2003년 10월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에 따라 인권NAP 수립 과정은 권고안 작성 및 본 계획 수립 단계로 이원화하기로 하였고, 인권위가 권고안 작성 기관으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인 실무 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시 인권위가 직접 NAP를 수립할 법적 지위와 권한은 없지만 인권 전문기관으로서 인권 NAP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후 과정은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 역할이 분담된 것이다.
- 인권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권 NAP 권고안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인권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 정부 연구기관들의 각종 보고서, 인권단체들의 자료집 등이 우선적으로 수집되고 검토되었으며 주요자료 번역과 기초현황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인권 NAP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행된 기초현황 실태조사는 자유권(8건), 사회권(10건), 사회적소수자(7건), 인권교육(1건) 등 총 26건의 연구용역에 학자·전문가,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위는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사회의 인권현황과 인권개선을 위한 주요과제를 진단하였다. 또한 인권 NAP권고안 작성을 위해 NAP추진기획단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¹⁾ 아울러 인권 NAP권고안 작성과정에서 십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정책토론회, 서면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인권NAP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인권단체의 전문성은 인권 NAP 권고안의 가치를 한껏 높였으며, 특히 인권 NAP 권고안에 담을 의제를 발굴하는 데 인권·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훌륭한 조언이 되었다.
- 권고안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마지막 절차는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였다. 인권 NAP 권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입법이나 정부정책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부처와의 협의는 인권 NAP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잖은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집행기관인 정부로서는 당장 사회적으로 부딪히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사안이나 예산 문제 등을 예로 들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권위로서는 ‘인권’이란 항목의 보편적이고 상호 불가분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향후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당시

1) 학계·전문가(9명), 인권단체 대표(7인) 등으로 구성된 NAP추진기획단은 15개월 동안의 운영을 통해 인권NAP 권고안 작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부처의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실무차원에서 인권NAP권고안 내용에 대한 정책협의를 통해 인권NAP권고안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NAP권고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사회적 합의를 결집시키고자 한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인권위원들의 역량을 총 결집시키는 노력과 병행되었다. 2005년 8월부터 인권위원 5명으로 인권NAP권고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6차례 회의를 통해 인권NAP권고안의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 워크숍을 3차례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끝에 2006년 1월 인권위는 대통령에게(권고 대상이 대통령이었던 것은 인권 NAP가 처음이었다) 인권 NAP권고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인권 NAP의 인권교육 내용

- 발제자의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참고로 제1차 인권 NAP에서 권고하고 있는 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차 인권 NAP의 인권교육 부분에 대한 권고의 내용은 크게 학교부문, 공직종사자, 시민사회 등 3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학교부문의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① 학교 인권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내용의 체계적 통합·편성 ②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③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과정 및 교원연수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④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⑤ 인권교육 연구기반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권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서, ① 공직 종사자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개설 등으로 인권교육 의무화 ②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 및 법률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및 선발시험에 인권관련 내용 포함 ③ 효과적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④ 군대 교육훈련기관에 인권교육 필수화 등 군대 및 준군사조직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 등을 권고하였다. 시민사회의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인권이 중심가치가 되도록 일반 대중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대중매체 등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① 자기능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소수자(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성적소수자, 병력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지원 강화 ② 기업대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경우 현지 인권교육기관과 협력·연계 프로그램 추진 ③ 인권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협력

체계 구축 ④ 대중매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인권홍보 강화와 언론인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 내용에 포함하였다.

4. 인권 NAP, 인권교육,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오늘의 발제자인 나영희 박사님은 인권위에서 인권 NAP를 수립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며 경험한 산 증인이다. 특히 인권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감독 하며, 그 이행 과정 모니터링도 직접 챙겨온 인권위의 인권교육국장(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인권 NAP의 인권교육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인권교육 NAP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데, 토론자도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다. 특히 인권위는 사회 각 부문 내의 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이행과 제도화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인권위가 시행해 온 인권교육 교재의 발간과 보급, 인권교육협의회 운영,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의 운영, 인권강사의 육성, 각 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의 일부 상설화 등 인권위의 역할이 돋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 아마도 전체 인권 NAP 권고안 각 항목 중에서 가장 성취도(이행 실적)가 높은 분야로 인권교육 분야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인권 교육 관련 NAP 영역에서 인권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인권위가 2006년에 대통령(정부)에게 권고한 인권 NAP 권고안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가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큰 폭으로 축소되었지만, 인권교육 NAP 분야는 사실상 실행 주체가 인권위가 되어야 하는 영역이 많았으며,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 차원에서도 법무부나 교육부를 압도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 문제는 나 박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인권교육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문화 형성과 확산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취약점이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작업이 축적되어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인권교육 불모지였던 우리 사회의 일부 영역에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는 인권교육 확산의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물론 여전히 인권교육에 대한 저항이 큰 입법부 및 사법부, 그리고 기업 등이 문제가 되지만, 보다 더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정치적인 저항이 조금 약해지고 인권친화적인 정부(정치 영역 포함)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들 ‘인권교육 사각지대’에 인권교육이 뿌리내리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 인권교육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작업은 인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그 전담기관이 되어야 한다. 만약 법무부가 집행기관임을 앞세워 인권교육 모니터링 분야마저 잠식하려고 할 경우, 그 동안 그나마 나은 이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인권교육 분야 NAP의 향후 진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그 동안 인권 NAP 이행 과정 및 그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집행기관인 법무부나 교육부 등 다른 부처가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한다면 이는 아전인수식 행태가 거듭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고 있는 정부보고서의 내용을 되 짚어보면, 본 토론자의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인권교육 분야는 전문성이 뛰어난 인권위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집행 기관의 이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중립적이며 객관적일 것이다. 법무부나 교육부는 인권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조직이기주의’적인 업무집행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인권교육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각 부처의 협력을 유인해 내어 어떻게 하면 인권교육을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건설적인 역할분담이라고 할 것이다.

5. 인권교육의 법제 준비를 ...

- 끝으로 발제자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인권교육지원법안’(이하 ‘법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본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인권교육 법제화와 관련하여 본 법안이 가지는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좀 더 다듬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법안 제11조의 인권교육센터의 업무 영역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종합계획) 이행 과정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추가해야 한다. 인권위는 무소속 독립기관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해서 그 형식은 물론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정부에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인권은 자신의 권리를 깨달아야만 누릴 수 있으므로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기본적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은 인간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이해, 인권을 존중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추구하는 일체의 교육적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고, 평등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갈등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참여와 민주적 과정을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인 단계인 것이다. 이러한 숭고한 내용을 가진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인권교육 분야가 안정적인 법제로 자리 잡아 우리사회의 인권감수성을 성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였으면 한다.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토론문

홍관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변호사)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인권교육

○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5부에 인권교육을 포함

- 현재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은 존재

- *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별도로 존재 : 부룬디, 크로아티아, 도미니카공화국, 피지, 프랑스, 그리스, 일본, 요르단, 멕시코, 니제르, 필리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우루과이
- * 국가인권행동계획에 인권교육 포함 :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콩고,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말라위, 멕시코, 몰도바, 노르웨이, 페루, 스웨덴, 베네수엘라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제5부는 인권교육의 의미, 관련 국제인권규범,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련 권고를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① 인권교육 일반, ② 학교 인권교육, ③ 공무원 및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④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⑤ 기업 및 언론인 인권교육, ⑥ 평생교육시설 인권교육, ⑦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홍보로 영역을 구분하여 수립

- 이 중 특히 인권교육 일반에 해당하는 추진과제들(인권교육법 제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권교육평가지표 개발 등)은 2006. 2.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법무부가 이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총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포함시킴²⁾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국가 정책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최초의 공식적인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른 기본(종합)계획들과 달리 법률적 근거 없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토대로 수립되어 그 자체로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한 연도별 이행성과 평가 절차 부재
- 계획 수립 당시,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각 부처 및 기관의 이행을 조장하고 장려하는데 중점

2) 발제문의 “나. 1차 NAP의 평가” 항목에 ‘인권교육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와 관련하여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부터 제기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NAP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이러한 의미에서 재확인 필요함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와 같은 의의 및 한계는 인권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동일함
 - 발제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인권교육이 정부 차원의 계획으로 공식화됨으로써 그 제도화와 양적 확산에 기여했지만, 인권교육의 질적 측면(내용 및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권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부분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 인권교육 추진 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 현행 법·제도 하에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분야를 보강하는 방안, ② 가칭 「인권법」, 「국가인권정책기본법」 등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틀 내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③ 인권교육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권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은 인권교육을 위한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세 번째 방안에 해당함

□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

① 법률안의 주요 내용

- 법률안은 인권교육의 정의·기본원칙,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책무, 인권교육종합계획,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실시 및 평가, 인권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이런 의미에서 법률안은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
- 법률안은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 주무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상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가 5년마다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권고(법률안 제7조)
 -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권고에 따라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국가인권위에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센터 설치(법률안 제9조 내지 제11조)
 - 공공기관은 매년 인권교육 실시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 표명
 - 국가인권위가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기관·단체에 인권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②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 틀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인권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 존중의 헌법 정신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인권교육 강화 요청에도 부합한다는 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특정 분야별 교육에 관한 법률 현황

- * 「과학교육진흥법」 - '67. 3. 제정 (교육과학기술부)
- * 「통일교육 지원법」 - '99. 2. 제정 (통일부)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05. 12.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 * 「환경교육진흥법」 - '08. 3. 제정 (환경부)
- * 「법교육지원법」 - '08. 3. 제정 (법무부)
- * 「경제교육지원법」 - '09. 2. 제정 (기획재정부)
- * 「식생활교육지원법」 - '09. 5.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 * '93. 6.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 * '94. 12. UN 총회,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선포
- * '95. 12. UN,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을 위한 행동계획' 확정
- * '04. 12. UN 총회,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 선포
- * '05. 7. UN 총회,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의 제1단계 행동계획' 채택
- * '10. 9. UN 인권이사회,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의 제2단계 행동계획' 채택
- * '11. 3. UN 인권이사회, 'UN 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채택

③ 법률안의 주무부처

- 법률안이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 주무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안의 기본 체계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01. 11.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이후 국가인권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며,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노력이 우리나라의 인권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큼
 - 그러나 이러한 법률 규정이나 그간의 추진 경과가 국가인권위가 인권교육을 전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은 물론,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법률안이 인권교육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자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헌법 및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정부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국가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직무를 분장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는 국제적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국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 권고기구로,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하여 권고 등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은 아님
- 법률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지우고 있는바(법률안 제5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법률안에 규정된 인권교육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주무부처를 정하고 주무부처의 책임 하에 인권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조직 체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임
 - 주무부처 중심으로 수립한 종합계획은 바로 정부의 종합계획이 되고, 주무부처는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직접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음
 - ※ 법률안에 따르면, 인권위가 수립한 인권교육종합계획은 권고안에 불과하고(제7조 제4항), 인권위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후 조치 역시 권고·의견표명에 불과함(제13조 제2항, 제3항)
 - 법률안과 같이 국가인권위가 인권교육을 총괄하는 주무기관이 될 경우에는, 정부 내 인권교육 총괄부처가 없어 인권위의 권고가 있더라도 정부 내에서 이를 책임성 있게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곤란함
- 국가인권위는 정책 수립·집행 기관이 아닌 권고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되, 법률안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는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경우도, 국가인권위는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이 중 정책적·재정적·사회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여 기본계획으로 수립함
 - ※ ‘파리원칙’도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인권교육·연구 프로그램 수립 지원과 시행 참여를 규정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3-(f)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인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하고 학교·대학·전문가 영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참여할 책무를 진다.

(A national institution shall, inter alia, have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To assist in the formulation of programmes for the teaching of, and research into, human rights and to take part in their execution in schools, universities and professional circles)

4] 인권교육 종합계획

- 법률안은 국가인권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권고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고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안 제7조, 제8조), 국가 차원에서 법률에 따라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결정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성격은 권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확정된 집행력 있는 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이라는 체계적 모순이 발생함
 - 이는 권고 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 모순임
 - 국가인권위가 수립·권고한 종합계획이 단순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면 정부의 종합계획으로서 의미가 없고, 강제성을 띠게 된다면 권고기관인 인권위가 정부의 정책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조직 체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적절함
 -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에 있어서도 법률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에 걸맞은 의견수렴 및 논의를 위한 기구·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법률안은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인권교육위원회가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권교육위원회는 국가인권위의 기존 위원을 구성원으로 한 소위원회로 설치될 것을 상정되어 있어서³⁾, 결국 3명 이상 5명 이하⁴⁾의 국가인권위 위원이 인권교육에 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 인권교육은 크게 학교 인권교육, 공공 인권교육, 사회 인권교육으로 나뉘고, 국가적 차원의 인권교육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정부 부처·기관은 물론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계자의 심의 절차 참여를 배제한 채 소수의 인권위원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법교육위원회 등이 민간위

3) 법률안에 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법률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제17쪽에서 “안 제9조의 인권교육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소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은 거의 없으므로 이에 의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어 인권교육위원회를 국가인권위 내 소위원회로 상정하고 있음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 제2항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

- 법률안 제7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존재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사항이 없고, 법률안 제10조는 인권교육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협의 대상은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인권교육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를 주무부처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하되, 그 수립절차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앞서 위원회 내부 의결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제적으로도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개발은 정부의 업무로 상정하고 있고, 인권위는 옴부즈만, 인권연구·훈련기관 등과 함께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조정·이행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음
-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중 관련 내용

11. 정부는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함.....으로써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Governments should play an active rol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the Decade through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
12.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인권기구, 옴부즈만 사무소, 인권연구·훈련기관은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조정, 이행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uch as human rights commissions, offices of the ombudsman and human rights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s should play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at the national level.)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 차원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은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따라 ‘인권옹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주관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법무부장관 의장)에서 수립한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제5부에 포함, 시행되고 있음

수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센터

- 법률안은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센터 등을 인권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률안 제9조 내지 제11조), 이러한 조직·기관은 인권교육에 관한 주무부처가 전문가 자문, 관계 부처·기관 협의, 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기관이므로 주무부

처에 설치하는 것이 행정조직 체계에 부합함

- 인권교육협의회의 경우, 인권교육위원회가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로 국무총리 산하나 주무부처 장관 산하에 설치될 경우에 별도로 설치할 실익이 없음
- 인권교육센터의 경우, 특정 기관 내부에 설치하기 보다는, 인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역량 있는 인권교육센터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바람직할 것임
- ※ 환경교육센터, 법문화진흥센터 등 참조

속 인권교육의 실시 및 평가

- 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권교육의 실시 결과를 매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법률안 제12조), 국가인권위는 실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법률안 제13조)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권고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보다 정부 내 인권교육 주무부처가 매년 인권교육 실시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의견표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4호, 제25조에 따라 현재도 수행 가능함

7] 인권교육의 지원

- 법률안은 인권위가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일정한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률안 제14조),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 예산은 체계적으로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나 정부 내 정책 추진 주무부처에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함⁵⁾
- 일본의 경우, ‘법무성 인권옹호국’이 인권계발을 위한 예산으로 '09년 기준 약 20억엔(약 262억원)을 배정받아, 이를 (재) 인권계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인권계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지방위탁사업은 매년 차년도 사업 요구를 받아 검토·사정 후 배정)
- ※ 참고로 법률안의 예산추계서는 제17쪽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인권단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예산을 2011년 기준 1억 3천만원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안 제14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하고 있어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경비를 법률안 제정 전 국가인권위의 단체 지원 예산인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상정

5) 경제교육지원법은 20억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329억원, 환경교육진흥법은 31억원, 식생활교육지원법은 74억원~196억원을 예산으로 추계한 바 있음

하고 있어, 인권교육 지원을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임

㉔ 법률안 상 인권교육의 범위

- 법률안은 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제12조에서 “인권교육의 실시 등”이라는 제하에 공공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안의 적용범위가 공공기관 내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인권교육은 공공기관 내부의 인권교육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와 사회 내 인권교육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함에도 법률안에서는 이 점이 간과되어 있어 문제임
 - 이를 위해 학교 인권교육, 사회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일 두거나 인권교육이 모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책무임으로 선언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환경교육진흥법」, 「법교육지원법」은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의 지원·진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본의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민의 책무’를 규정
 - 사회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법률안 상 공공기관에 포함된 구금·보호시설(법률안 제2조 제2호 바목)의 경우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마치며

-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부 차원의 계획으로 마련됨에 따른 의의와 성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제문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 국가인권위가 담당했던 역할과 정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함
- 인권교육의 발전과 전국적 확산 및 진흥을 위해서 인권교육에 관한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향후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2부

- 발표 : 나달숙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 토론

토론 1 :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소장)

토론 2 : 양효정 (순천시 자치행정과)

토론 3 : 이시현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토론 4 :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나달숙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

I. 서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교육의 목적이 인격의 온전한 발달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에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인류의 공통적 인권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인권교육은 이제 인류의 하나의 보편적 흐름으로 자리잡혀가고 그 제도화 또한 활발히 전개되어가고 있다.

유엔은 1993년 6월 25일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내재된 권리이자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보장하는 수단인 교육권의 이행을 다룬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의 이해와 인식을 위한 국제 및 지역차원의 인권문서에서의 평화, 민주주의, 개발과 사회정의가 인권교육에 포함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선언 후 ‘유엔인권교육 10년(1995년~2004년)’이 선포되었고, 이의 후속조치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년~2009년)의 실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년~2014년)을 제시하였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실시와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권고하였고,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 훈련에 중점을 둘 것 제시함으로써 인권교육에서의 국제적 수준의 지속적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유엔은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포괄적인 인권교육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그동안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협약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유엔이 제시한 인권에 대한 국내적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시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증진 보호와 국제적 인권기준의 실천 행동을 보여 왔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부처와 기관은 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상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은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인권교육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끝나는 2015년에 유엔에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배경하에 국내적으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한 군대, 법집행관 등의 인권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노력이 있어왔으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소홀히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하에서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 프로그램에 기준한 인권교육 수행을 위한 필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목표와 공무원 인권교육의 세부적 내용

1. 프로그램의 목표

2010년 1/4분기 인권이사회 결의문 12/4에 의거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행동계획의 주요한 기초자료를 참고로 하여,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010~2014)을 제시하였다.⁶⁾ 이 프로그램계획 인권이사회 결의안 (2/4)에서 회원국들은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에 중점을 둘 것과 초등과 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또한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은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전체적 목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 ▶ 인권실천을 진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고등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할 것
- ▶ 관련된 지속가능한 국가적 전략의 개발, 채택, 이행을 지원할 것
- ▶ 고등교육내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소를 지침으로 제공할 것
- ▶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및 지자체 등과 같은 조직을 통한 고등교육기관과 회원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권장할 것
- ▶ 지방, 국가, 지역, 국제 등의 정부 및 비정부기관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구축을 지원할 것

2. 프로그램상 공무원 인권교육 추진의 세부적 내용

본 프로그램 행동계획은 국가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관할권 하의 시민들의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다양한 범주의 성인 전문가를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문직 집단은 상호 매우 상이한 역할과 책임, 제도적, 조직문화 및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제인권기준을 갖고 있다.

국내법 및 정부구조에 따라 공무원에는 정부부처나 국 혹은 과 등에서의 관료

6) 2010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 등 28개국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중심으로 해당 초안을 검토하여 최종 마무리 지었다.

및 정책입안자, 지방정부 및 지자체 뿐 아니라 재정, 경제부처 등의 피고용인, 교사, 공공의료전문가 및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1) 전략 수립배경

공무원과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세계인권선언 및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등(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와 그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에서 비롯되는 전략임을 밝히고 있다.

2) 추진전략

훈련 정책 및 기타 관련 정책은 인권교육훈련이 전문적인 직무수행 및 행동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

당 연수자의 소속 조직/기관의 해당 방침과 규칙 등에 연결됨으로서 지원되어야 하며, 공무원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 재직 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훈련 정책에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직 전 연수 프로그램에 대상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
- ▶ 재직 전 및 현직 훈련과 관련하여 전문직 자격부여 및 경력개발을 위한 필수과목과 같은 포괄적인 인권교육 정책 채택을 진작할 것
- ▶ 아동, 여성,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등과 같이 전문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취약집단을 다루는데 적합한 공무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
- ▶ 인권훈련 제도화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권훈련에 대한 의무는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해당 분야와 전체 사회 모두 참여하도록 하며 지속적 훈련이 될 것
 - 모든 관련 과목에 인권원칙 및 기준이 확실히 통합되도록 진행 중인 재직 전, 재직 중 훈련 커리큘럼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적절한 특정 인권훈련 과정을 개발
 - 정부기관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전문가를 배치할 것
 - 가능한 경우 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Training of trainers)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교육자를 위한 교육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는 인권교육방법과 교육설계에 관한 시간을 포함 할 것
 -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인권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각 국가체계에 맞춘 제도화된 인권훈련에 관한 평가 및 영향 평가 매카니즘을 구축할 것
- ▶ 인권교육훈련은 단절된 노력이 아니라 인권 역량강화 구축전략의 일환이 되는 경우 인권훈련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특히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에 관한 정책과 규정의 중요성
- 이러한 정책은 인권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평등, 차별금지, 존중, 존엄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인권원칙의 연속선상에서 공무원의 임용, 평가, 보상 및 훈련 정책을 수립할 것

공무원 등 성인을 위한 인권교육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략에는 특정분야의 구체적 대상을 목표로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기준 및 실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시청각 방법으로 브레인 스토밍, 역할놀이, 집단작업, 사례연구, 패널토의 및 견학 등의 창의적이고 상호적인 성인교육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인권훈련은 인권이 실천되는 환경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이행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 행동강령, 공무원과 근무자를 위한 직업윤리, 모든 분야의 인권기준을 포함하는 고용인을 위한 실천 강령, 피고용인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헌장 등 분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문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
- ▶ 인권관련 행사, 대회, 시상, 장학금 수여 및 경품 등을 통하여 인권분야에서 성과에 대해 인정하고 축하하고 격려할 것
- ▶ 인종차별, 성폭력 등과의 전쟁 등과 같은 공식적인 행동계획의 채택을 포함하여 넓은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것

3) 행위주체

프로그램 행동계획 구현을 위한 주요책임의 주체는 개별 국가 편제에 따라 공공행정기관, 내무부, 국방부 등의 공무원 및 재정부 등 협력하는 기타관련 정부 부처 뿐 아니라 지방 정부 등에 있다. 인권교육 관계자들은 국가기관 및 조직들과 협력하여 작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 공무원훈련전문대학, 행정학교,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 해당집단이 일하는 곳
- ▶ 공무원 및 법집행관 노조
- ▶ 내무, 국방관련 국회의 인권위원회 및 자문단체 등을 포함한 입법 기관
- ▶ 유네스코, 인종주의 및 차별철폐 도시연합(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and Discrimination) 등과 같은 국내 혹은 지역적 네트워크 및 협회 등에 속하는 기관, 지자체 등;
- ▶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등의 국가인권기구
- ▶ 국가적 및 지역적 인권자원/교육센터
- ▶ 비정부기구

행동계획의 이행에 있어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상황, 우선과제와 역량 등에 따라 실천 가능한 현실적 목표와 수단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각국의 이행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에서의 인권훈련의 국내 수준에서의 계획, 이행, 및 평가 등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진행의 개요를 기술하고 있다.

- 제1단계: 고등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군대 내의 인권교육 및 훈련 현황 분석
- 제2단계 : 우선순위 설정 및 국가 이행전략 개발 목표와 우선순위 확인, 이행
- 제3단계 : 이행과 모니터링
- 제4단계 : 평가의 국가이행단계를 수립하고 실천과 결과물을 이끌어 내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최종 평가보고서를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각국이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종합하여 전 세계의 이행사항을 포괄하는 종합보고서를 준비하여 2015년도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III.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

1. 외국에서의 공무원 인권교육⁷⁾

1) 필리핀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인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국을 두어 공적 분야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국방부, 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국에서는 홈페이지 운영, 사이버교육(E-learning), 사이버도서관(E-Library), 포탈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권에 관한 정보제공과 인권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 인권교육훈련센터인 ‘아태인권연구소’를 두어 인권강사를 위한 훈련 및 연구지원, 조사관을 위한 인권조사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Fellowship 프로그램이나 아동·여성·원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특수 훈련 및 아태지역인권위원회의 간부 및 직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인권교육의 특징은 헌법차원으로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어 인권교육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엔의 인권교육 10년 이행을 위해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 1998-2007’을 추진하였다.

필리핀에서는 국가인권정책조정실이 있어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협조적인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자칫하면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권교육을 해당부처에서만 수행하거나 혹은 인권교육을 수행하는데 소홀할 수 있는 점을 이러한 국가인권정책조정실에서 부처간 조정역할을 하고 각 부처간 협조를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2) 인도

인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훈련국을 두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정부가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협조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분야에 있어서 직무관련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더 확대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관기관들과 민간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In-House Training Programs)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3) 일본

일본은 2000년에 ‘인권교육및인권계발의추진에관한법률(2000.12. 법률 제147호)’을 제정하여 정부와 공공단체의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과 지방공공단체의 정부와의 연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책무로 하고 있으며, 지방단체의 인권교육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본에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행동 본부’와 법무성이 담당해오고 있다. 법무성은 인권옹호국 및 그 하부기관인 8개 법무국과 42개 지방 법무국의 인권옹호부문, 약 14,000명의 인권옹호위원으로 구성되고 있고, 각 관계 부·성·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과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인권계발활동을 시행하는 주체간의 횡단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인권계발활동을 연계·협력하는 협의체로,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에는 ‘인권계발활동도도부현네트워크협의회’를, 시정촌(市町村) 단위에는 ‘인권계발활동시정촌네트워크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유기적인 인권계발활동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⁸⁾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권단체와의 협력 또한 활발하여 휴-라이즈 오사카라는 인권정보센터를 만들어 인권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점은 의미있는 점이다. 열악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 및 인권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민간인권단체활동에 정부부처가 협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교육 수혜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

한국에서 공무원 교육은 주로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중앙공무원교육원, 도단위의 각 지역의 공무원교육원에서의 공무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육도

8) 인권계발활동도도부현네트워크협의회는 50개로 1998년~2000년에 정비하였고, 인권계발활동시정촌네트워크협의회는 193개로 2000년~2007년에 정비하였다.

거의가 직무와 관련한 교육으로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해 개설된 과정은 극히 미미하다.

1)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의 교육현황

<표1> 2011년 중앙공무원교육 현황

구분	운영 과정
기본교육 -14개과정, 55회운영	과장후보자 핵심역량과정/연구지도직관리자 리더십강화과정/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업무지향)/고위공무원단후보자과정(관계지향)/일반직 특채자교육/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레벨업과정/개방형 관리자 과정/고위정책과정/신입 관리자과정/5급승진자과정/지역인재채용자과정/7급신규자과정/5급특채자과정/장애인 특채자과정
전문교육 -12개 과정, 22회 운영	미래예측과 신성장산업과정/그린아카데미 통계분석 및 보고서기획과정/달인 교실/사회통합 및 갈등관리과정 정책홍보과정/공직리더십과정 글로벌역량강화과정/교수전략과정 입법실무과정/강의스킬향상과정/교수요원FT과정
글로벌역량교육 -5개 과정, 7회 운영	국외훈련자 일본어심화과정/국외훈련자 영어심화과정/국외훈련자중국어심화과정/국제협상과정/영어프리젠테이션과정
창조교육 5개 과정, 17회 운영	공정심리교실 미학과 인문학으로 배우는 창조리더십 과정/ 창조역량 개발과정/창조적 문제해결과정/창조적문제해결과정 /파일럿 테스트
사이버교육 -6개 분야 총82개 과정	법·제도(10개 과정)/행정실무(21개과정)/역량개발(20개과정)/ 기본소양(13개과정)/외국어(8개과정)/ 공직가치 및 국정시책(8개과정 중-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

이상과 같이 중앙공무원 교육과정인 집합교육 86과정, 사이버과정 82과정 총 168과정 중 인권교육은 1개의 과정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2) 2011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1) 중앙

공무원교육이 이루어지는 중앙 부처 3곳을 선정하여 공무원 인권교육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011년 중앙 정부부처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교육기관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차시 (인정시간)	연간인원 (명)	비고
중앙공무원 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	전체	6.7~6.26	(8)	300	사이버
교육과학기술 술연수원	다문화교육이해하 기	일반직 공무원, 교원, 교육전문직	6.13~6.30	15	180	사이버
법무연수원	출입국인권감수성	전체	6.1~6.3	(21)	기당 20명	집합

	인권감수성훈련	전체	6.7~6.9/6.27~6.29	(21)	회당 30명	집합
--	---------	----	-------------------	------	--------	----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과정은 몇 과정에 불과하고 기업체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성희롱·성매매관련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부처보다 훨씬 많은 과정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다문화교육이해와 인권의 이해에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2011년 지방 정부부처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교육기관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차시(인정시간)/기수	연간(기당)인원	비고
행안부지방행정연수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2.9~8.24	16(8)/6	200명	
	다문화사회지원과정		지방 5~6급	4.18~4.22	35시간	40	집합 + 사이버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글로벌문화이해과정		5급이하 공무원	5.11~5.13(3일)	(21)	40	
	베트남문화이해과정		5급이하 공무원	5.16~5.18(3일)/11.2~11.4	(21)	80(40)	
경남공무원연수원	다문화사회이해과정		6급이하 공무원	3일	/3기	105(35)	집합
	다문화사회의 이해		전체	4.1~4.20	16(8)	80(40)	사이버
전남공무원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증진과정		5급이하	6.22~6.24	1기	30	집합
	다문화가족지원과정		5급이하	3.9~3.11		60(60)	집합
	다문화사회의 이해		전공무원	5.2~5.13/9.5~9.16		300(15)0	사이버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다문화과정		5급이하 공무원	5.16~5.18/11.2~11.4(3일)	(21)	80(40)	집합

	다문화사회의 이해	경상북도 공무원	5월, 7월	16(8)		사이버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전직원	4.18~20	12	40	집합
	다문화사회의 이해	전 공무원	6.13~10.21	16(8)	120(60)	사이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다문화사회지역공동체이해과정	5급이하 공무원	2일		800(200)	집합
	인권 및 국민권익신장과정	5급 이하 공무원	2일		20	집합
	다문화사회의 이해	전직원	3주		100	사이버

(3) 광역시

광역시 중 광주광역시는 다른 기관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공무원 재직 전 혹은 재직 중에 인권교육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 2011년 광역시별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

교육기관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차시 (인정시간)	연간인원 (명)	비고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인권감수성향상과정	5급이하 공무원	5.23~5.24		120(40)	집합
	글로벌문화탐험과정(다문화)	5급이하 공무원	3.21~3.23/6.22~6.24/11.9~11.11	(2)	40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다문화사회의 이해	전체	7.7~7.27/12.1~12.21	16(8)	200(100)	사이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	인권의 이해	7-9급 신규임용자(신규임용후보 자)	3.7~3.25/5.16~6.3/10.10~10.28	2	75(25)	기본교육
	사회적 취약계층이해 향상과정[사회복지정책 이해 외]	6급이하(사회 복지담당 또는 교육희망자)	3.14~3.16	14	30	전문교육
	국제업무능력향상과정[인권의 이해/외국문화의 이해와 글로벌 마인드	6급이하 공무원	6.22~6.24	1/2	20	전문교육
	인권감수성향상 과정[인권의 이해 외]		4.13~4.15	4	20	전문

						교육
	우리문화바로알기 과정		9.26~9.28/10.12 ~10.14/11.7~11.9	2	90(30)	부분
	다문화사회이해과정 [다문화 인권 외/ 문화사회 이해 외/다문화사회 이해 외]	전직원	3.9~3.11/7.20~7.22/9.28~9.30		29/30/30	전문교육
	다문화시대의 행정인의 역할	시전직원/자치 구 6급이상 공무원/공단	8.30/8.31/9.1/9.2		1,336(334)	부분
	인권의 이해	3급이상 임, 직원				
	인권교육	동장	2.24~2.25	2	92	부분
	글로벌마인드 함양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3.10	4	92	부분
	자원봉사 역할과 실천 마인드 제고방안	자원봉사자	10.25	1	200	부분
	저출산고령사회 이해	6급이하 공무원	11.23~11.25	2	20	부분
	e-함께일하는 세상을 위한 모니과정[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외]	전직원	9.5~9.9	7	30	사이버
	e-인권의 이해과정[인권이란 무엇인가 외]		6.20~6.24/10.10 ~10.14	9	20	사이버

(4)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사이버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무원 사이버인권교육 사이트를 설치하여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표5>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인권교육 현황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차시(인정시간)	연간인원(명)	비고
인권의 이해	행정공무원	4.8~4.20/ 4.12~4.25/5.10~5.23/6.14 ~6.27	9	16/ 300 /300 /300	사이버
인권의 이해 심화과정	행정공무원	4.8~4.20/ 4.12~4.25/5.10~5.23/6.14 ~6.27	9	16/100/100/100	사이버
차별예방과정1	행정공무원	4.12~4.25/5.10~5.23/6.14 ~6.27	10	300	사이버

차별예방과정2	행정공무원	4.8~4.20/4.12~4.25/5.10 ~5.23/6.14~6.27	10	300	사이 버
행정과 인권	행정공무원	4.12~4.25/5.10~5.23/6.14 ~6.27	10	300	사이 버

그러나 광주광역시 등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IV.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행 과제 및 결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적으로 유엔 인권교육의 기준을 국제적 문서를 통해 제시해 왔고, 국제적 인권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인권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보편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고, 인권교육의 제도화 움직임 또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엔 인권선언 10년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인권교육훈련선언’이 유엔이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방향으로 각국은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실천과 적극적 이행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여전히 인권교육, 특히 공무원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또 다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설치조항 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마련은 인권교육이 헌법상 교육권에서의 도출이 아닌 권리 자체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의미한다. 필리핀과 페루처럼 헌법에 인권교육의 의무성을 명시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책무를 규정할 수도 있고, (중앙, 지방)공무원훈련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의무성을 명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지원을 위한 법제정이 아닌 현상태로 개별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관련법 규정들을 모두 수정을 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둘째, 인권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인권교육의 의무성을 명시하여야 한다.⁹⁾ 확인한 바와 같이 공무원훈련 교육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훈련법에 근거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매우 미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성 명시는 공무원 인권교육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와 공무원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검찰, 경찰, 군대, 교정 분야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이도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법무부내에서도 검찰, 교정 등 관련 인권교육교재가

9)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규정) 그나마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만들어져 이를 보급하고 인권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인권교육에 대해 의무성이 없는 한 공무원 전체 범위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권교육, 특히 공공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많은 혹은 국민과 접촉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는 위치의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이 직무훈련교육과 같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인권교육에 있어서 각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부와 민간인권단체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정부와 민간인권단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권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풍부한 인권교육 contents 개발과 보급, 인권강사 등 인권교육인력의 양성과 다각적인 활용과 상호지원교류를 통하여 인권교육이 확대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공무원도 공공분야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국가기관 중 공무원이 차지하는 인권침해는 경찰, 구급시설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권익관련 지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자세로서 인권침해를 미연에 예방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권교육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분야 직무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각도의 인권교재개발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처 마련과 함께 인권교육 관련부서의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전담하다 시피하고 있고, 법무부에 인권국이 설치되어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외국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임은 부인할 수 없다.¹¹⁾ 따라서 국가인권

10) <표6>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건수	%	각급 학교	검찰	경찰	구급시 설	국정 원	군	기타국 가기관	다수 인보 호시 설	사법 기관	입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출입 국관 리소	특사 경	기타
접수	41,499		268	1,779	9,337	16,252	168	792	4767	4,320	625	46	1,990	31	169	955
종결	39,697	100	213	1,728	8,924	15,810	167	764	4,430	4,003	600	45	1,888	16	169	940
구성 비 (%)	100		0.6	4.3	22.5	39.2	0.4	1.9	11.5	10.4	1.5	0.1	4.8	0.1	0.4	2.3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참조

1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활성화 예산 5억3천7백만원, 법무부 인권교육예산국 예산 15억 1천만원은 일본의 주요 인권활동부처의 예산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일본 법무성 인권옹호국의 2009년도 예산 약 36억 6,500만엔(약 510억원) 중 인권계발활동예산은 약20억4,200만4엔(약284억2천), 도쿄도 총무국 인권부 예산은 약 3억 8천만엔(약 52억 9천만원), 교토부 부민생활부 인권계발추진실 예산은 약 10억엔(약 139억원), 재단법인 인권교육계발추진센터 예산은 약 5억엔(약 70억원)).

위원회나 국가 인권관련 부처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여섯째, 제2차 세계인권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평가 및 영향 평가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어야 한다. 인권 교육의 환경조성, 전략수립 이행 모두가 중요하지만 인권교육과 훈련이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인권교육에서 나아가 인권훈련의 실시도 인권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인권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 또한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인권보장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이 제시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실천이행은 결국 한국을 모범적 인권국가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공무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소장)

1. 공무원 인권교육 필요성

○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행복추구권의 보장,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국가의 책무. 공무원은 존재 자체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가기관. 이러한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집행능력, 자세를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인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인권은 일상의 문제임. 권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모든 영역은 인권의 현장임. 공직사회(공무원)는 정책 입안과 재원 배분 등의 집행 행위를 수행하며 이는 행정적 차원의 권력행위임. 필연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행정행위의 유형과 태도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음.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수호자로서의 자세가 요청되며,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우리사회의 경우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안고 있음. 양극화와 빈곤, 비정규직 노동권, 장애인·여성·이주민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 교육권, 건강권, 환경권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형성해주는 것은 국가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음. 이는 한정된 재원에서 시혜적 차원의 복지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인권친화적인 관점에서의 정책형성과 집행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임.

○ 공직사회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달식 관계, 상급자에 의한 인격적 비하, 하급자에 대한 프라이머시 침해, 성희롱 등 내부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잔존해 있음. 이러한 내부의 문제는 대시민 행정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무원 간의 상호존중의 문화와 평등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며, 시민에 대한 개인감정개입과 부적절한 행정행위의 근절이 요청됨. 이러한 문제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공무원 인권교육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2. 공직사회의 과제

○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비롯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함.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의무화에 앞선 과제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한 교육은 하나의 일거리로 느껴져 자발적 참여를 저해할 수밖에 없음. 현행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과정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확대가 기해져야 하며,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스스로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필요함.

○ 기관장,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요청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경우 개설과목 자체가 빈약하고, 소양함양과정 등에 한 부분으로 끼워넣기식으로 개설되어 있음.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 교육과정에 집중되어 있음. 별도의 인권교육과정으로 개설하여 교육의 다양

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간부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여 그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함.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인권친화적인 행정의 토대를 구축해야 함.

○ 특히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보건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처(부서)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이 우선적으로 요청됨.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부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함.

○ 공무원 노조 등 공직사회 내부 자치조직의 참여는 인권교육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노조원 등 구성원에 대한 내부교육 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한다면 공직사회의 인권 감수성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판단됨.

3. 공직사회 협력기관단체들의 과제

○ 수준 높은 강사의 양성과 지원이 필요함. 교육의 성과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과제임. 별도의 예비강사네트워크 구축, 강사양성과정 운영, 강의 시연, 강의 후 평가시스템 운영 등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내적 과정과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됨.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충실화가 요청됨. 대상의 조건과 특징에 맞고, 자발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식전달을 넘어 업무에 있어서 지혜로 전환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을 개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

○ 일상적인 생활, 개인의 사회적인 삶과 연관성 있는 인권교육이 되었으면 함. 인권에 대한 이해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개인의 자기정립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함. 인문적 접근을 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함.

○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존중, 일상에서의 적극적인 만남의 노력,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의 자세,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행정과제의 제시 등의 노력을 함께 한다면 금상첨화.

4. 공통의 협력과제

○ 인권교육의 필요성, 절박성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함. 그것은 지역의 인권상황의 실태, 심각성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됨.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이해의 수준을 맞춰보려는 노력이 요청됨. 몇몇 지역에서 제정된 기본 인권조례는 이러한 요청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례적 협력네트워크의 운영이 필요함. 예로 민관 공동으로 ‘인권포럼’을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교육적, 정책적 과제를 함께 찾아 간다면 인권친화적인 거버넌스의 실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다양한 인권영역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각 분야의 인권증진을 위해 요청되는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자치법규의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현실과 공무원 인권교육 적용 방안

양효정 (순천시 자치행정과)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이 ‘민주공화국’에 봉사하는 국가의 공복이다. 당연히 공익을 추구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또 공무원의 인권의식이다.

고백하자면, 이번 토론회 발제문을 접하기 전까지 공무원으로서 인권에 대한, 특히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다. 광주광역시 정도의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정도가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실제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 내부와 공무원 교육의 현실, 그리고 인권교육의 현실적 적용방안에 한정코자 한다.

1. 지방자치와 공직사회 인권 인식의 현실

지역은 지방자치와 민선 자치단체장에 의해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에서 공직사회 내부는 크게 흔들리기도 하고 반발도 있었지만 길게 돌아보면 좋은 방향의 변화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과거 통치시대에는 공무원이 국가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문화가 반대로 국민에게는 권위적인 공무원을 만들었다. 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공무원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과 주민을 위한 공공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여건과 시대적 발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권의식 수준도 함께 변화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적합한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을 고객으로, 행정을 서비스로’ 인식하게 하는 경영마인드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맞춰 대민 친절 서비스 교육은 유행처럼 번졌지만,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교육은 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조직보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내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공무원들의 개별적인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에 대한 인권존중과 공직 사회 내부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공익’으로 돌아가 도시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공무원 교육의 실태와 인권교육 적용방안

공무원 교육은 주로 공무원 교육원(중앙, 지방행정연수원, 광역시도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상시학습’체계를 통해 사이버교육, 각종 민간 교육과정도 연계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의 기본이수 과정(신규자 교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무원 채용과 함께 기본과정으로 이수하게 되는 신규자교육의 커리큘럼에 필수 과목으로 편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과정 개발이 절실하다. 발제에서 제시해주신 것처럼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대부분 다문화, 장애, 여성과 같은 소수자 인권에 집중되어 과정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해당업무 담당자외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광주광역시와 같이 해당분야와 일반적인 과정이 함께 개설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광주시의 교육과정을 타 지역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류 제도를 도입하거나, 광주시의 사례를 확산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인권교육 현장탐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자체 교육담당자들을 초청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담당자의 인식변화를 통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에 인권교육 접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인식변화를 통해 스스로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는 공무원노조를 통한 조합원 교육 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나 공무원노조의 현재의 역량으로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먼저 다양한 교육인력 양성과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지역 스스로 도시만들기 전략으로서 인권도시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평생학습도시 전략의 경우 이러한 도시만들기 전략으로 전국으로 확산됨)

인권도시가 갖춰야 하는 조건과 필요성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인권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차원의 인권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주광역시 인권교육 기본계획(안)

이시현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1. 들어가며

사회과학의 세계에서는 개념정의를 이루어지면 연구의 절반이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인권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해 당연히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 알려져 있고,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좀더 쉽게 풀어써본다면, 인권은 “존엄하게 태어난 존재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혜켈의 고찰에 따르면 모든 것은 변화·발전하므로 인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존재의 근본문제에 대한 진리와 그 실현의 관점에서 나오는 항구적인 면을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여건의 변화 또한 거스를 수 없기에 광주광역시는 인권의 속성 중에서도 확장성과 포괄성에 주안점을 두고 인권교육을 접근해볼 계획이며, 포괄적 관점에서 공공기관 인권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최 측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인권교육 기본계획(안) 전체를 제시하겠습니다.

2. 인권교육에 관한 접근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지식의 공유,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 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 훈련, 정보, 학습활동을 인권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세계인권 선언」은 인권교육 자체를 인간의 존엄성에 내재된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 따라 인권교육을 정의해보면 “인간의 존엄성에서 기인하는 권리로서, 인권실천·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이 제시한 인권교육 관련규정, Framework, 목표, 실행원칙입니다.

㉠ 인권교육 관련 규정

- 세계인권선언 26조 (1948)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협약 7조 (1965)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 (1966)

-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에 관한 권고 (1974, UNESCO)
-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978 비엔나)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0조 (1979)
- 고문방지협약 10조 (1980)
- 학교에서 인권의 교수 학습에 관한 유럽의회의 권고 (1985)
- UN아동권리조약 (1989, UN총회 만장일치 채택)
 - 인권교육의 의무자로 국가를 명시
-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조약 33조 (1990)
-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및 세계행동계획 (1993 몬트리올)
-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1993, 세계인권회의)
- UN 인권교육 10년 (1995~2004)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불관용을 반대하는 더반선언과 행동계획 (2001)
- 세계정상회담 성과보고서 131항 (2005)
- UN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05~2007)
- 장애인 권리조약 4항 및 8항 (2006년)
- 더반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22항 및 107항 (2009)
- UN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10~2014)
- UN 인권교육훈련선언 (2011)

② 인권교육에 관한 Framework

가. 인권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행동준거들

- 인권에 관한 공공정보 세계 캠페인 (1988-현재)
- 유엔 인권교육 10년 (1995~2001)과 그에 따른 행동계획
- 세계 평화문화와 아동학대 금지 10년 (2001~2010)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엔 교육 10년 (2005~2014)
- 세계 인권학습의 해 (2008~2009)
- 세계 문화친선의 해 (2010)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2011)

나. 광주광역시 자체 인권교육 Framework

- 「2011 광주인권도시네트워크」 참여 대표단의 ‘광주인권도시 선언문’ 발췌

[인권교육 : 인권도시의 기초]

- 우리들이 인권을 알고 소유하지 않으면 인권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인권교육과 학습은 인권도시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유된 신념이 있어 왔습니다. **비형식적인 교육과 연극은 인권 프레임워크를 젊은이들에게 소개하고 통합하고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 배움을 지속시키는 응용기법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인권을 알고 소유하며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입니다.**
- **학교, 도시 및 기관들 간의 모범관행을 공유하며 교환하는 것은 새롭게 설립된 인권도시들 내에서의 학습 및 교육과정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인권교육과 인권을 도시로 통합하는 규정된 접근법이 아직은 없으므로, 각 도시는 서로의 공유된 경험과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많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인권도시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 中

- 우리는 인권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네스코의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 다카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14)’,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과 기타 적절한 **국제 기준과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인권교육과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③ 인권교육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기술습득, 인권친화적 행동 유도
-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발달
- 모든 국가, 선주민 (indigenous), 소수집단 간의 이해,관용,남녀평등 및 우에 증진
-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효과적 참여 합법화
- 평화의 구축 및 유지
-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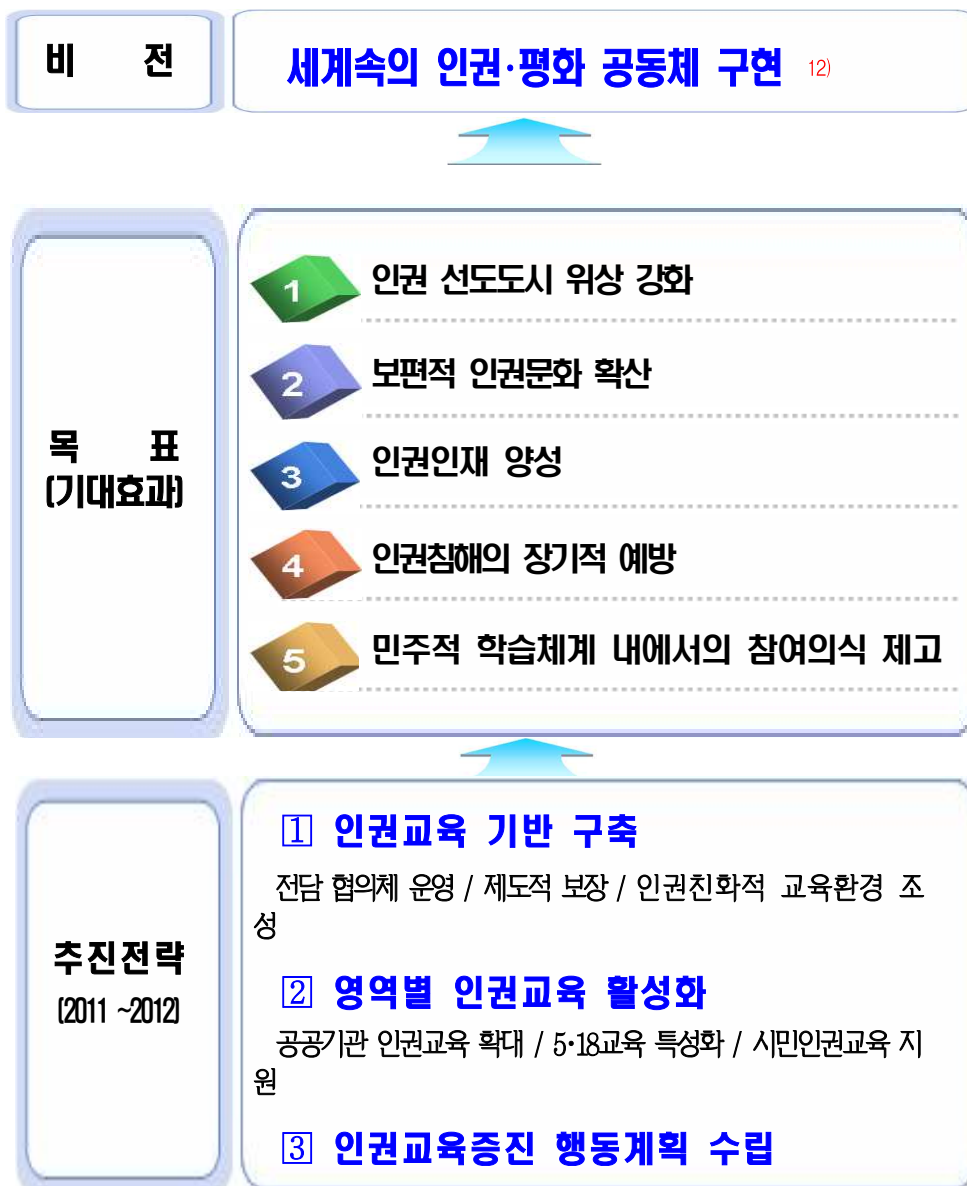
④ 인권교육의 방향 및 실행원칙

- 인권의 상호 의존성, 상호연관성, 불가분성과 보편성의 증진
- 차이에 대한 존중과 공감능력을 함양, 차별의 반대
- 지속적이고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석을 촉구
- 자신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욕구를 인식,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을 강화
- 책임 있는 의무 이행자(특히, 정부 공무원 등)가 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과정을 고려
- 현지의 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인권조약과 메커니즘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배양

- 참여적 교육방법론 활용
- 참여, 인권의 향유, 온정한 인격의 발달을 고취시키고 결핍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과 학습 환경을 조성
- 인권이라는 개념을 추상적인 규범의 표현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여건의 현실로 변형시키는 방법과 수단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인권을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연관

3. 인권교육 비전 및 목표

인권공동체를 추구하는 광주광역시의 인권교육 비전과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2) 2010. 7.1 출범한 민선5기 광주광역시 5대 시정방침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역사를 지켜낸 저항의 에너지를 '화해와 협력'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광주공동체의 총체적인 발전역량을 '세계속의 인권·평화 공동체 건설'로 극대화

4. 세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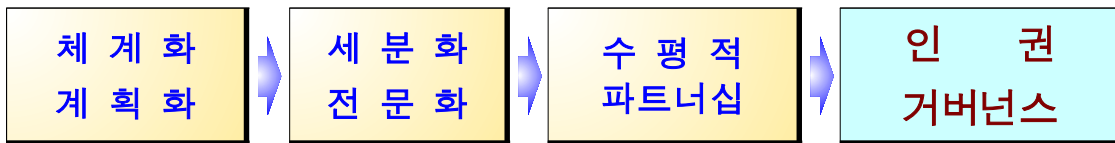
㉠ 인권교육 기반 구축

가. 인권교육 전담 협의체 구성·운영

(1) 근거

-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¹³⁾
-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 용역 보고서」¹⁴⁾ 중 인권교육 분과 제안 내용

(2) 역할 및 기대효과



- 체계화·계획화
 - 지역내 인권교육 현황 진단·분석, 계획수립 및 목표설정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세분화·전문화
 - 인권교육 참여방식을 세분화, 보다 전문적인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역할 분담
- 민·관·학 파트너십 구축
 - 지속가능한 인권교육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외연 확대

(3) 참여대상

- 공공기관¹⁵⁾ :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광주여성재단 등
 - 연구기관 : 인권 관련 대학 부속기관 및 전문연구기관
 - N G O :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나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단체
 - 개 인 : 인권활동가 또는 인권을 연구하거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 기 타 :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의지가 있는 국제기구, 타지역 기관, NGO, 개인
- ⇒ 회의 참석률, 인재 발굴 측면을 고려하여 **실무자급**¹⁶⁾으로 협의체 구성

나. 인권교육의 제도적 보장

(1) 개념에 관한 제안

13) 제2조의 4 - “민주·인권·평화도시 학습체계”란 민주·인권·평화의 정신과 문화를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하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운영체계를 말한다.

14) 2010.12월 ~ 2011년 6월까지 광주발전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재철 박사)이 수행한 용역으로, 광주광역시 인권도시 추진 전략 및 과제 등을 연구

15) ‘광주인권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중 인권교육 관련 제안 내용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시민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여 포함

16) 부회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집행위원장, 집행국장, 선임/전임연구원, 간사 등을 뜻하며, 별도 실무자가 없는 경우 대표자가 실무급

·인권교육의 제도화¹⁷⁾

- 법률, 조례, 학교,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법제화 및 교과목 형태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체계
- 장 점 : 학습자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
- 단 점 : 의무를 강조하는 형식적·강제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공무원 중심의 인권교육으로 제한될 가능성 존재

·인권교육의 제도적 보장

- 법제화 과정 및 역사적·전통적 형성과정, 구조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을 중시
 - 인권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제, 실무부서, 프로그램 개발 등 구조적 접근
 - 장 점 : 교수-학습자의 수평적 입장,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거버넌스 실현
 - 단 점 : 학습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구조적·종합적 접근방식에 따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중요시하므로 추진주체의 실무하중 가능성 존재
- ⇒ 수평적 관계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추진의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제도적 보장’으로의 용어통일을 제안

(2) 인권교육의 법제화 실행방안

- 인권헌장¹⁸⁾ - 인권교육 보장 내용 및 실천계획 명기
- 인권지수¹⁹⁾ - 인권지표 항목에 인권교육 실시현황을 포함하여 실태파악 및 독려
- 인권조례 - 인권조례 개정시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교육 의무화 등 보장 내용 삽입

(3) 기타 실행방안

- 인권교육 공간 확보²⁰⁾
- 인권교육 강사 및 수강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평생교육 프로그램 편성 - 대학 및 자치구 평생교육프로그램과 연결

다.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1) 필요성

인권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는 생활문화의 한 형태로 존재하

17) 페루는 국가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필리핀은 법률과 규칙을 통해 인권교육 관련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음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회)

18) 2011.4.8 현장 제정위원회 출범하여 제정작업 진행중. 제정위원 40명과 기초위원 7명으로 구성. 인권도시 광주 미래청사진 제시 및 광주공동체의 인권실천의지를 규범화할 계획

19) ‘광주인권도시기본계획’ 용역팀이 개발중인 분석지표 - 지역내 인권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영역별 인권지표를 설정하고 현재상태를 산출화(계량화)하여 체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인권보장 측정기제

20) ‘광주인권도시기본계획’ 용역보고서에서는 별도의 인권교육센터 설치 검토 제안

므로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생활문화 속에서는 인권을 제대로 배울 수 없으며, 배운다 한들 실효성 없는 교육으로 전락

→ 인권친화적 생활문화 추진과정에서 인권을 인식하므로 인권교육의 요소로도 작용

(2) 실행방안

- 생활속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 및 활용
- 반인권문화 설문조사 및 추방 캠페인 전개
- 인권증진 및 인권교육 참여 MOU 체결
- 고위공직자 / 사회지도층 일일 장애체험
- 인권현장 선포 - 인권실천 시민다짐대회 병행
- 외국인노동자 인권장터 개최 지원, 인권나눔바자회 개최 지원
- 인권 연례보고서 발간 및 배포
- 인권문예전 개최 - UCC, 글쓰기, 그림, 사진, 표어, 동요, 가훈 등 공모 및 전시
- 인권실천 유공자 포상 - 우수 학교 / 부서 / 단체 / 개인 포상 및 보조금 지원
- 인권지킴이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중인 인권지킴이단 홍보 및 참여
- 지하철 김대중컨벤션센터역 인권테마관 활용도 제고
- 인권(교육)센터 설립-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양성, 자체 인권교육 실시

㉒ 영역별 인권교육 활성화

가. 공공기관 인권교육 확대

(1) 필요성

- 민선5기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시정방향 3대축으로, ‘세계속의 인권·평화공동체’를 5대 시정방침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관내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직무교육에 해당**하며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기준 이행²¹⁾

(2) 실행방안

① 인권교육과정 활성화 및 인센티브제 도입

- 광주시공무원교육원 주관 인권감수성향상과정 및 인접교육 운영 및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공무원 인권교육과정에 홍보 및 참여 확산

21) UN ‘제2차 (2010-2014)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은 공무원 인권교육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주시공무원교육원 주관 사이버인권교육 홍보 및 참여확산
- 인권교육 참여율 상위부서 포상 등 인센티브제 도입

② 방문형 순회교육 도입

- 시청 ~ 동사무소까지 방문형 순회교육 실시

③ 조례를 통한 인권교육 장려

- 조례개정시 관내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이수제’²²⁾ 도입 검토 또는 인권교육이수자(민간 수화교육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참고]

2011년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 주관 인권교육 현황

총 54과목, 16개 과정, 124시간, 2,098명 수강예정 (2011.6.17현재)

연번	과목명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기간	인권교육 (시간)	연간인원 (명)	비고 (부분/전문/사이버)
1	인권과 장애체육인의 역할 외 5과목	사회적취약계층 이해향상과정	6급이하(사회복지담당 또는 교육희망자)	3.14~ 3.16 (3일)	13	22	전문
2	인권감수성훈련 외 7과목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6급이하	4.13~ 4.15 (3일)	14	20	전문
3	다문화 인권 외 4과목	다문화사회 이해과정	전직원	1기 : 3. 9~ 3.11 (3일)	9	29	전문
4	다문화 사회 이해 외 4과목			2기 : 7.20~ 7.22 (3일)	9	30 (예정)	전문
5	다문화 사회 이해 외 4과목			3기 : 9.28~ 9.30 (3일)	9	30 (예정)	전문
6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외	e-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하모니	전직원	9. 5~ 9. 9 (1주)	7	30 (예정)	사이버
7	인권이란 무엇인가 외	e-인권의 이해	전직원	1기 : 6.20~ 6.24 (1주)	9	20 (예정)	사이버
8	인권이란 무엇인가 외			2기 : 10.10~10.14(1주)	9	20 (예정)	사이버
9	다문화가족과 함께 세계 인류 국가 만들기	중견간부양성과정	6급	2. 7 ~12. 9 (44주)	2	41	부분
10	행정과 인권				2	41	부분
11	다문화가족 이해				3	41	부분
12	장애인의 이해				2	41	부분
13	행정과 인권	주민생활서비스 향상과정	동장	2.24~ 2.25 (2일)	2	91	부분

22) 일각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강제교육이며 주입식 제도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이 있음.

14	인권감수성 훈련	성과향상 코칭스킬과정	전직원	4.20~ 4.22 (3일)	2	19	부분
15	행정과 인권	국제마인드함양과정	전직원	1기 : 3. 2~ 3. 4(3일)	2	26	부분
16	다문화 사회의 이해	신입실무리더과정	7-9급 신규임용자 (신규임용후보자)	1기 : 3. 7~ 3.25 (3주)	2	21	부분
17	공무원과 인권감수성			2기 : 5.16~ 6. 3 (3주)	2	19	부분
18	행정과 인권 (예정)			3기 : 10.10~10.28 (3주)	2	25 (예정)	부분
19	인권의 이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과정	전직원	1기 : 3.28~ 3.30 (3일)	2	23	부분
20	인권의 이해	갈등관리&문제해결	전직원	1기 : 6. 8~ 6.10(3일)	2	23	부분
21	행정과 인권 (예정)			2기 : 9.14~ 9.16	2	20 (예정)	부분
22	인권의 이해 (예정)	시정시책교육과정	전직원	1기 : 8.30 (1일)	2	334 (예정)	부분
23	인권의 이해 (예정)			2기 : 8.31 (1일)	2	334 (예정)	부분
24	인권의 이해 (예정)			3기 : 9. 1 (1일)	2	334 (예정)	부분
25	인권의 이해 (예정)			4기 : 9. 2 (1일)	2	334 (예정)	부분
26	인권의 이해 (예정)	우리문화 바로알기과정	6급이하	5기 : 9.26~ 9.28 (3일)	2	30 (예정)	부분
27	인권의 이해 (예정)			6기 : 10.12~10.14 (3일)	2	30 (예정)	부분
28	인권의 이해 (예정)			7기 : 11. 7~11. 9(3일)	2	30 (예정)	부분
29	인권의 이해 (예정)	창조도시브랜드 전략과정	전직원	10.17~10.21 (1주)	2	20 (예정)	부분
30	인권의 이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정	6급이하	11.23~11.25 (3일)	2	20 (예정)	부분

나. 5.18교육 특성화

(1) 의의 및 기대효과

① 교양교육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5·18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인받게 되었고, 5·18은 인류가 보존하고 학습해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5·18교육을 인류의 자산에 대한 교양교육으로 활용

② 현장교육

·5·18은 ‘국민의 자유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유린한 국가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인권현장이므로, 5·18사적지·국립 5·18민주묘지·5·18기념식·오월제 등 입체적인 콘텐츠를 잘 보존하고 개발하여 민주와 인권에 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현장교육으로 활용

③ 사례교육

·5·18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해소 및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과정이자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의 좋은 소재로 활용

(2) 실행방안

① 5·18 표준학습안 개발

② 계기수업 및 체험학습

③ 5·18기록물 아카이브 설치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④ 5·18기념재단 주관 ‘5·18시민강좌’ 등 5·18 관련교육 지원

다. 시민인권교육 지원

(1) 필요성

·세계인권선언의 탄생배경 등 인권의 역사와 경향에 대한 설명 및 국가인권위 홍보중심의 기존 인권교육과 더불어 인권을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연관시키는 실천지향적인 시민인권교육²³⁾(인접교육)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

→ 실감나는 인권교육 지원 필요

·인권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 성장기 기본소양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것이 안정적·장기적이지만,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과거에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존재

→ 평생교육으로서 인권교육 제공

(2) 시민인권교육의 종류

① 5·18 교육

- 국가폭력에 맞선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통해 민주시민 양성, 사회정의

확대

23)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인권교육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2005)에서는 시민인권교육을 넓은 의미의 인권교육 및 인접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UN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 제20항은 “평화교육, 인권과 가치교육, 다문화교육, 세계화교육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 제도내의 모든 노력들은 인권교육적 요소를 그 내용과 방법론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인접교육을 인권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유사개념 또는 부분개념으로 해석

② 평화(통일교육)

- 전쟁 해소 및 상호존중을 통한 평화상태 확립을 목표로 하는 교육, 평화의식 확산

※ 요한 갈통²⁴(Johan Galtung)의 평화론

1. 평화의 개념

- 가. 소극적 평화 : 단지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평화
- 나. 적극적 평화 : 행복과 복지와 번영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의 평화
(사회정의의 실현, 인권의 옹호와 확대, 고통과 궁핍으로부터의 해방)

2. 폭력의 개념

- 가.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해오는 퍼스널하고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폭력 (전쟁, 테러, 린치, 폭행 등)
- 나. 간접적이고 구조적이고 잠재적인 폭력
(나쁜 사회제도, 잘못된 관습, 불평등한 경제, 나쁜 정치나 법률, 환경파괴와 오염, 나쁜 개발 등)

③ 다문화교육

- 다양한 문화, 민족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교육, 이해와 공감문화 확산

④ 지속가능한 교육

- 환경권, 자결권, 발전권 등 쉰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해하는 교육

⑤ 노동자 교육

-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며 차별적 요소의 본질을 연구, 타파하는 교육

⑥ 양성평등교육

⑦ 장애차별 예방교육

⑧ 세계시민교육

⑨ 기타 - 소수자·아동·청소년·노인·도시빈민·병력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

(3) 시민인권교육 지원 방안

① 재정 및 강사 지원

- 인권함양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조

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인권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홍보

③ 인권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견학 프로그램

24)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학자로서 세계평화학회 창시자이자 세계평화연구소장

- 국내 인권교육 우수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견학
-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우수 인권교육 도시 상호방문 추진

③ 인권교육증진 행동계획 수립

가.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1) 필요성

·향구적인 인권교육 보장

- 연차별 실행계획 및 실행체계(전담부서)의 설치방안,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기관 및 NGO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조달 방안,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경향에 대한 대처 등을 포함한 중장기 인권교육 계획 필요

(2) 실행방안

·先 인권교육 실태조사, 後 연구용역 의뢰

- 지역 내 영역별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향구적 인권교육 보장에 관한 연구 수행

나. 국제기준 이행전략 수립

(1) 필요성

·지방도시에서의 인권교육 역할 강조 추세 반영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및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은 국가인권 기구에 의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장려

(2) 실행방안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이행전략 협의

- 2011년 5월 광주에서 개최된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교육을 강조하였으나, 향후에는 구체적인 이행전략 논의 필요

5. 나오며

광주는 숭한 외침과 군사독재의 총칼에도 산맥이 되고 물줄기가 되어 나라를 구해 낸 도시로서의 역사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혼란의 와중에도 질서를 잘 지킨 시민의식의 결정체로서 비교우위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민선5기를 맞아 광주는 ‘뜨겁고 정의로운 역사적 정체성’을 ‘인권’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환경이 문화와 더불어 사회발전의 총체적 판단기준이 되는 新인본주의 시대를 맞아, 인권을 실감할 수 있는 인권교육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토론문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1.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인권은 개별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가정, 시민사회,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주된 규범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쉽게 동의될 것 같다. 인권교육이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면서 국민의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도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일반인의 92%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반해, 인권교육을 받아온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은 5.3%에 불과하였다.

2. 공무의 효율성과 인권

인권에 대한 관심은 행정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행정의 많은 사안들이 인권에 기초해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인권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행정은 법규범의 집행이다. 문제는 종래 행정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행정은 인권과 공존하기 힘들다. 국가 존립의 근거가 인권의 보장이라면 인권과 공존하는 행정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인권보호는 침해에 대한 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Rights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 인권관련 법·제도·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의 행정의 전과정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을 할 때 인권친화적인 행정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인권을 백안시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한 행정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먼저 용산참사가 그러하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발생하여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전면부각한 것은 용역깡패들의 공공연한 폭력과 이들의 배후에서 건설자본의 편을 들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행사이었다. 공권력 행사가 폭력적인 성격을 띠는 이유는 그만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렇게 된다. 왜 경찰은 새벽녘 대테러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무리한 진압작전을 벌였을까? 안전사고를 대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진행된 강제진압은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5명의 평범한 인간 그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생계를 꾸리며 살아가던 우리 주변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다.

용산참사를 부른 것은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강제퇴거조치에 있다. 도시재개발 사업은 모든 주거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익추구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심재개발 사업은 그 자체가 반인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이 그렇고 결정과정도 그렇다. 심지어 퇴거조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주거의 목적을 벗어난 지 오래이다. 투기와 이윤의 대상이며,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어 있다. 만약 주거민의 이익을 모두 감안하는 사업이라면 그 보상은 소유권 즉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이어서는 안된다. 인간을 위한 보상이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및 그 공간에서 생활을 이어나가던 사람들간의 적절한 이익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자본을 비롯한 지배세력의 욕망만을 충족시켜줄 뿐이며, 빈곤층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에게는 잔혹한 역사의 현상이 되어 왔다. 뉴타운, 주거지정비사업 모두가 그러하다. 경제성장을 최우선과제로 내걸었던 개발독재의 시기의 반인권적 모습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2009년 11월 유엔경제사회문화위원회는 용산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계획이나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특히 강제철거는 사전통보없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거주대책의 마련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변한 것은 없다.

문제는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 재개발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비자, 환경피해자, 여성, 형사피고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재민, 취약계층의 노인, 공익제보자, 난민, 성전환자, 한센병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민변에서 변호사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익인권소송도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3.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국가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국가주의문화, 군사부일체 같은 왜곡된 봉건문화, 전쟁문화, 폭력문화, 가부장제문화, 서열화된 교육환경 등 반인권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작업이 10년 넘게 진행되었다. 특히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의 교재개발이나 인권교육은 적어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경찰, 교도소,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지침 개발이나 교재개발 등이 그러하였다. 그럼에도 용산사태와 이 사건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소극적인 모습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점에서

인권국가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국가의 민주화는 선거와 함께 인권의 진전을 향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무원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 추진전략이 정교하게 짜여져야 할뿐만 아니라 행정실무에도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에 기반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2001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6조는 인권교육과 홍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소극적 규정형태로 되어 있다. 또한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집행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담당할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다.

□ 별첨

1.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문
2.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문
3. 인권교육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안
4. 인권교육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2009)

[별첨1]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문

제목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일자	2011 / 03 / 31
형태	의원제안 (15인, 대표발의 이은재)
	(이하 자유선진) 권선택, 이명수, 이용희
	(이하 한나라) 이은재, 한기호, 조전혁, 임동규, 이한성, 김소남, 나성린, 박준선, 성윤환
	(이하 민주) 우윤근, 장병완

제anyi유	<p>유엔인권이사회는 워킹그룹을 결성하여(2010. 3)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인권교육훈련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겨있음. 또한, 유엔총회는 유엔 가입국들에게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차시기(2010-2014) 행동계획’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 군대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2010.7),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상태임.</p> <p>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p> <p>이에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p>
주요내용	<p>가. 이 법은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p>

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학습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5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계획 시행일부터 1년 전까지 정부에 권고하도록 정함(안 제7조).

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 제7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의 장은 교육위원장이 되도록 정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함(안 제10조).

사.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간행물 발간,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인권교육센터 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 11조제1항 및 제2항).

아. 인권교육센터가 안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자. 인권교육센터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카.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타. 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인권교육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별첨2]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문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80
----------	-------

발의연월일 : 2011. 3. 31.

발 의 자 : 이은재·이한성·김소남 권선택 박준
권성동 장병완 성윤환 이용희 한기호
·이명수·조진혁 임동규·나성린·
우윤근 의원(15인)

제안이유

유엔인권이사회는 워킹그룹을 결성하여(2010. 3)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인권교육훈련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겨있음. 또한, 유엔총회는 유엔 가입국들에게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2차시기(2010-2014) 행동계획’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 군대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2010.7),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상태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 법률이 미비하여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인권의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안 제2조).

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학습과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천명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정함(안 제5조).

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계획 시행일부터 1년 전까지 정부에 권고하도록 정함(안 제7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 제7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협의회의 장은 교육위원장이 되도록 정하며,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함(안 제10조).

- 사.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인권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간행물 발간,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인권교육센터 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아. 인권교육센터가 안 제1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 자. 인권교육센터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인권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 차.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 카.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타. 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인권교육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급·보호시설
 - 사.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권교육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인권교육계획의 수립

제7조(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인권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인권교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권교육의 촉진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종합계획의 시행일부터 1년 전까지 정부에 권고한다.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 제4항의 권고에 따라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교육 지원 조직

제9조(인권교육위원회)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2. 인권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인권교육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인권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교육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인권교육협의회) ①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장은 교육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기관의 국장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2.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권교육 관련 단체 또는 인권교육활동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관리자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권교육센터 등)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센터를 둔다.

② 인권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공공기관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3. 인권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간행물 발간
4. 인권관련 정보의 수집과 보급·관리
5. 인권교육센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

③ 인권교육센터의 설치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인권교육센터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교육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인권교육센터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인권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인권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⑥ 지역인권교육센터의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권교육의 실시 및 평가

제12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매년도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교육의 평가 등)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교육의 지원

제14조(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위원회는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인권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3년 이상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한 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관련 학술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인권교육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로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인권교육협의회의 설치·구성(안 제10조)

위원회에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증진을 도모하는 인권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인권교육센터의 설치(안 제11조)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인권교육의 실시(안 제12조)

공공기관 등의 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인권교육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안 제14조)

인권교육관련 기관·단체 등의 인권교육활동과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원위원회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이 법이 2011년부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추계 기간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으로 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인권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2011년 1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17억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2011년~2015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안 제11조	센터 인건비	60.1	129.1	138.3	148.2	164.1	639.8
	기본경비	103.4	221.3	237.0	253.9	271.9	1,087.5
	자산취득비	30.2	-	-	-	-	30.2
합계		193.7	350.4	375.3	402.1	436.0	1,757.5

주: 2011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재정소요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1팀

팀 장 정 문 중

예산분석관 유 희 진

(02-788-4651, now-here@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비용추계의 대상

(1) 안 제9조의 인권교육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소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거의 없으므로 이에 의한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안 제10조의 인권교육협의회는 기존 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미 실시중인 단순 회의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상비에서 집행하므로 별도의 비용을 추계하지 않기로 한다.

(3) 제정안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신규 건축 또는 임차가 예상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사업으로 운영중인 충주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을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건축비 및 임차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제정안 제11조제2항 센터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이하“인권교육과”)에서 예산사업으로 이미 수행중인 인권분야 강사양성 및 교육 등 인권교육사업을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이므로 주요사업비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추계하지 않는다.

(5) 따라서 센터 설치로 인해 신규로 채용될 인력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만을 추계하기로 한다.

(6) 안 제12조에 따른 인권교육은 해당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관련경비는 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계리될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계하지 않는다.

(7)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인권단체들에 재정적 지원을 할 예산을 2011년 기준 1억 3천만원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안 제14조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비용추계의 방법

〈 비용 추계 방법〉

※ 추가 재정 소요 = 인권교육센터의 신설에 따르는 추가 인건비+기본경비+자산취득비

2. 인권교육센터의 조직·구성(안 제11조)

가. 센터의 규모

현재 인권교육과(정원 12명)에서는 인권교육 기본계획, 제도 및 정책 연구,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제정안은 센터를 설치하여 인권교육과의 업무 중 인권교육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 11조가 규정하는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를 참고하여 기획연구팀과 교육연수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가상적으로 구성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인권교육센터의 업무 및 인력 분장

조직	업무	총원	구성원
센터장	센터업무총괄	1	센터장 1인
기획연구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자료수집 및 연구조사, 인권교육관련 협력 사업 등	4	팀장 1인, 팀원 3인
교육연수팀	인권분야 전문가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인권교육훈련 실시 등	4	팀장 1인, 팀원 3인
합계		9	

나. 센터 운영비

(1) 인건비

현재 인권교육과에서 인권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4명이 센터로 전보되는 경우, 센터의 설립에 따라 순증되는 인원은 5명이다. 이 5명은 [표 3]과 같이 센터장 1인(3급), 팀장 1인(4급), 팀원 3인(5급 1인, 7급 1인, 기능직 9급 1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센터의 설치에 따라 증가되는 인력

구성	인원	직급
센터장	1	3급
팀장	1	4급
팀원	3	5급 1인, 7급 1인, 기능직 9급 1인
합계	5	

그런데 추가되는 정원 5명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경우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전보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5명의 신규채용 수요가 발생한다. 이 때 신규채용은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추정한 인건비는 2011년의 경우 [표 4]과 같다.

[표 4] 2011년 추가 인건비 소요액

직급	인건비			
	기본급(a) ¹⁾ (백만원)	기본급대비 인건비 실지급액 추정비율(b) ²⁾	인원(c)(명)	연간 실지급액 (a×b×c×12)(백만원)
일반직(9급)	1.01	1.82	5	110.2

주: 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봉급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0. 4, p. 234

2. 직급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실지급액 추정 비율,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0. 2, p. 26

[표 5] 인권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추가 인건비 총액 추정치 : 2011~2015년

(단위: 백만원)

	2011.7~12	2012	2013	2014	2015	합계
실지급액(a)	55.1	118.0	126.4	135.4	150.0	584.9
법정부담금(b)	5.0	11.1	11.9	12.8	14.1	54.9
인건비(a+b)	60.1	129.1	138.3	148.2	164.1	639.8

[표 5]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하고 있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인 7.1%(2012년 이후)²⁵⁾을 적용한 연도별 인건비 추계액에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²⁶⁾을 더하여 구한 추가 인건비 총액 추정치이다.

25)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 2008, p. 323.

26) 기관이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은 실지급액 대비 2011년 9.02%, 2012년 이후 9.42%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0. 02, p. 27.

(2) 기본경비

인권교육센터의 기본경비는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율인 66.6%²⁷⁾를 적용하여 구한다. 이 때 기준 인건비는 [표 3]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표 6])로 하여 [표 7]과 같이 구한다.

[표 6] 센터에 추가되는 인력의 인건비

(단위: 백만원)

	인건비		
	기본급(a) ¹⁾	기본급대비 인건비 실지급액 추정비율(b) ²⁾	연간 실지급액(a×b×12)
센터장(3급)	6.12	1.38	101.39
팀장(4급)	5.01	1.38	82.95
팀원(5급)	2.42	1.84	53.39
팀원(7급)	1.60	1.79	34.47
기능직(9급)	1.74	1.82	38.10
합계	16.90		310.30

주: 1.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봉급 기준단가, 기획재정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10. 4, p. 234

2. 직급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실지급액 추정 비율,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0. 2, p. 26

[표 7] 연도별 기본경비 소요액: 2011~2015년

(단위: 백만원)

	2011.7~12	2012	2013	2014	2015	계
실지급액(a) ¹⁾	155.2	332.3	355.9	381.2	408.3	1,632.9
기본경비(a×66.6%)	103.4	221.3	237.0	253.9	271.9	1,087.5

주 1: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인 7.1% 적용, 국회예산정책처, 『재정 기준선 전망』, 2008, p. 323

(3) 자산취득비

센터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조사²⁸⁾한 공무원 조직 신설에 따른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2010년 1인당 588만원)를 기준으로 하되, NABO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²⁹⁾(2011년 2.8%)을 적용하여 604만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11년 5인의 추가인력에 대한 필요 자산을 일괄적으로 구매할 경우, 자산취득비는 3,020만원으로 예상된다.

27) 대한민국 정부, 「2011년도 성과계획서」 p. 8. 국가인권위원회 재정현황

28)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기준정보』, 2010. 2, p. 11.

29) 국회예산정책처, 『2011-2014년 경제 및 재정 전망』, 2010. 11, p. 8.

(4) 합계

제정안 제11조에 따라 인권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표 8]에서와 같이 2011년 1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17억 5,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2011년~2015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센터 인건비	60.1	129.1	138.3	148.2	164.1	639.8
기본경비	103.4	221.3	237.0	253.9	271.9	1,087.5
자산취득비	30.2	-	-	-	-	30.2
합계	193.7	350.4	375.3	402.1	436.0	1,757.5

주: 2011년도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재정소요

[별첨3]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8년 수정판] (pp.219~245)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I. 인권교육

II.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III.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별첨4]

2009년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상황 (pp.181~200)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 관련 이행상황

- I. 인권교육
- II.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III.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한국인권재단